



노인인력개발포럼

Forum for Labor Force Development for the Aged



■ 권두언 | 조남범

■ 기획주제

노인일자리 제반환경의 주요 현황 및 시사점

1. 근로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이현미
2.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 제고 방안 | 박경하
3.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과 선호 중심으로 | 이소정

■ 자유논문

1. 중고령자 근로관에 관한 국제비교 | 최숙희, 강우란
2.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백학영, 윤민석

■ 우수학위논문 소개

1. 노인의 사회참여와 질에 관한 연구
- 활동영역과 수준을 중심으로 | 주경희
2. 고령자 경제활동참가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1986~2005년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박진화
3. 실업크레딧제도가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고용취약계층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 이지은



노인인력개발포럼 (3호 / 2009)

인쇄일 : 2009. 12. 29

발행일 : 2009. 12. 31

발행인 : 조남범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37-838)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69-9 성령빌딩 6층

전 화 : (02) 6007-9100~9

홈페이지 : www.kordi.or.kr

제 작 : (주) 문영사 (02) 503-7420~1

편집위원회 명단

편집위원장 : 김미혜(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위 원 : 강상경(서울대학교)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이금룡(상명대학교)

최숙희(한양사이버대학교)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모선희(공주대학교)

임재영(고려대학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권중돈(목원대학교),

유태균(송실대학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한정란(한서대학교)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이재원(부경대학교)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백의(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간 사 : 박경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편 집 행 정 : 김지애(한국노인인력개발원)

Contents

■ 권두언 조남범 · 2

■ 기획주제 노인일자리 제반환경의 주요 현황 및 시사점

1. 근로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이현미 · 5
2.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 제고 방안 | 박경하 · 27
3.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과 선호 중심으로 | 이소정 · 57

■ 자유논문

1. 중고령자 근로관에 관한 국제비교 | 최숙희, 강우란 · 86
2.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백학영, 윤민석 · 108

■ 우수학위논문 소개

1. 노인의 사회참여와 질에 관한 연구
-활동영역과 수준을 중심으로 | 주경희 · 136
2. 고령자 경제활동참가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1986~2005년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박진화 · 141
3. 실업크레딧제도가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용취약계층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 이지은 · 147



올해 초 극심했던 경기 위기 상황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공백 없는 지원을 위해 2010년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정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곧 시작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대한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학계나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 해왔으나, 그동안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언론에서도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해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고 점차 그 정책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표적인 주요 노인복지정책이며 가장 선제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04년 2만5천→'05년 3만5천→'06년 8만→'07년 11만→'08년 11만7천→'09년 16만(추경포함 19만6천)).

2010년에도 노인일자리 목표사업량은 전년도보다 2만 6천자리가 증가한 18만 6천 자리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근로시간 탄력운영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현재의 획일화된 근무체계가 대폭 개선되어 운영된다. 또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개발·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생산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실질적인 판로확보와 노인생산품 홍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어느 복지정책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지원일자리사업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강조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리는 시점의 중요성, 주요한 노인복지정책으로써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 노인인력개발포럼 제3호에서는 “노인일자리 제반환경의 주요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기획주제 하에 노인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의 현황 및 쟁점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근로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과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노인 근로에 긍정적인 요인은 강화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노인 근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 제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논문인 ‘중고령자 근로관에 관한 국제 비교’,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원생 우수학위논문 수상작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앞으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의 소중한 연구들이 모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정책들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더욱더 노인인력개발포럼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2009년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조남범

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이현미*

본 연구에서는 늘어나는 근로 희망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고자,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하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노인에 대하여 '믿을 수 있다', '착하다', '친절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수적이다', '쇠약하다', '고지식하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신뢰성, 성실성, 헌신성 등의 심리적 태도를 장점으로 꼽고 있었지만 창의성, 사고의 유연성 등의 사고능력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근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신뢰성, 헌신성, 성실성, 생산성, 몰입력, 동기부여, 기술과 능력 보유 등에서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태도, 노후 근로 희망 유무 등,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및 동료노인 유무,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노후 근로 희망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인식개선 필요성 및 저연령층,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집단 등 특히 일하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근로 노인, 노인일자리 문제, 사회적 인식

1. 서론

2009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7.1 기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이미 고령화 사회(7%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양 증가라는 짐으로만 작용하는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jwlomi@kordi.or.kr)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2009.5), 고령층 중 약 48.9%인 4,457천명이 현재 취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령층의 57.6%인 5,251천명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난 수명과 은퇴 후의 기간을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비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04년 도입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제활동 욕구 해소를 위해 양적 확대 기초를 보여 왔으며, 신정부는 '09년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의 생산적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의 과제 추진을 명문화하고 있는 등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높은 비율이 노인이 된 이후에도 일하고자 한다는 것이 많은 사회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일반인들은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이 되면 은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늘어나는 근로 희망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은 노인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 태도 및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은 노인의 '쇠약함' 때문이라고 한다. 부정적 고정관념(negative stereotypes)의 대부분은 질병(illness)에 기인하며, 일반인 및 노인은 노년기를 '개인의 삶에서 가장 나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Palmore, 1990). 또한 특히 현대에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풍토 때문에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이 증가하고 있다(Palmore, 1990). Palmore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질병(illness), 무능력(impotency), 보기 흉함(ugliness), 정신적 감퇴(mental decline), 정신



적 질병(mental illness), 쓸모없음(uselessness), 고독 또는 고립(isolation), 빈곤(poverty), 우울(depression) 등 9가지로 요약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연령에 따라, 또는 노인 부양여부 및 접촉하는 노인의 특성,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이선자, 1989), 중년층은 청년층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거나(윤성혜, 1990),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이영숙, 2001; Hummert et al., 1994). 청(소)년기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가구 내 노인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김윤정·정선아, 2001; 백문화·조병은, 1992; 성규탁, 1995; 박경란, 1994), 노인과 자주 접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김윤정·정선아, 2001; 김지형·장윤옥, 2001). 또한 중년층의 태도는 만성질환노인을 부양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모경빈, 1990) 접촉하는 노인의 특성 및 관계의 지위, 부양부담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질병을 가진 노인 또는 가족 내 노인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데 반해, 노인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근거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노인을 접하는 청·장년층은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태도가 일반 노인에 대한 인식에 비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접촉하는 노인의 특성이 노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하는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하여 측정한 조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밝히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밝힌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수준을 탐색적으로 밝히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적용하여 성,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노인의 특성 및 관계의 질 등의 요소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첫째,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과 함께 일하는 국민의 일반적인 근로 노인 및 동료 노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500명이다. 2008년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에 따라 3-way 할당 배분을 하였고, 다른 한편 광역시도 단위 내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한 전국 직업 분포에 따라 2-way 할당 배분을 하였다. 직업분포를 함께 고려한 이유는 본 조사가 노인인력의 ‘근로’와 관련된 조사이며, 그 특성상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관 및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국민의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포함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비용 문제로 제주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본조사의 설문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설문지의 의미전달력 및 응답 이해

용이도, 설문집중도 및 조사몰입도, 조사 전반의 현장 의견 등을 측정하였으며 2009년 9월 17일~9월 23일간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가지고 2009년 10월 7일~11월 11일까지, 5주간 1,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FTF(Face to Face), 즉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일반국민조사의 경우, 할당표에 따라 무작위 가구 방문 후 면접원 타계식으로 이루어졌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1)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5점 척도로 주관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 또는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

노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 척도는 원영희 등(2002)이 Sanders(1984)의 노화의미분법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번역,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20개의 형용사 쌍을 양극에 두고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조사에서는 7점 척도(1: 매우 긍정적 - 7: 매우 부정적)로 조사하였으며, 3.5~4.5 사이에 있을 때 중립적이라고 보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5점 척도로 조사(1: 매우 부정적 - 5: 매우 긍정적)하여 3점을 중립적이라고 해석하였다. 해석하였던 예를 들어 ‘어리석다 - 현명하다’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에 대해서 1~5점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어리석다’의 부정적 태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현명하다’의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를 통한 의미분별척도는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인간의 여러 현상을 비교적 단순한 설계에 의하여 포착할 수 있간의 그러한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이미지 측정였으므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개별 태도 항목에 대해

분석할 뿐점수아니라의 전체 20개 항목 점수의)로노인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 태도점수로 간주하고 정적였으 탐색 시 활용하였다. 20점~100점의 로 널리보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지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특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를 Cronbach's $\alpha = .823$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경하(2008)의 고령인력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태도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15개의 항목 중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 6개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로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697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분석, t-test 및 ANOVA 분석을 활용하여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밝히고자 하였고,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하여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일반국민은 총 1,500명이며, 남성이 전체의 49.5%, 여성이 50.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60대 이상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약 43.7세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학 이상 학력의 소유자가 3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주부, 학생, 무직자 및 퇴직자)가 전체의 41.7%였으며, 전문/기술/행정/사무 종사자가 전체의 21.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의 19.0%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와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표본설계 대비 직업별 오차 평균이 3.4% 가량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부모+자녀 가구가 6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대가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가구도 12.7%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 거주자가 전체의 48.0%, 중소도시 거주자가 46.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어촌 거주자는 6.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N	%			N	%
성별	남	743	49.5	종교	개신교	316	21.1
	여	757	50.5		천주교	105	7.0
연령대	20대	306	20.4		불교	304	20.3
	30대	330	22.0		유교	2	0.1
	40대	340	22.7		기타	17	1.1
	50대	244	16.3		없음	756	50.4
	60대이상	280	18.7		가구 형태	1인가구	88
	평균연령	43.7세		부부단독		184	12.3
학력	무학	31	2.1	부모+자녀		1,027	68.5
	초졸	121	8.1	3세대이상		185	12.3
	중졸	138	9.2	기타		16	1.1
	고졸	716	47.7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91	12.7
	대학이상	494	32.9		100-199만원	125	8.3
직업분 류	전문/기술/행정/사무직	315	21.0		200-299만원	403	26.9
	서비스/판매직	212	14.1		300-399만원	361	24.1
	농림어업 숙련직	62	4.1		400-499만원	263	17.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285	19.0		500만원 이상	157	10.5
	주부	267	17.8	지역 규모	대도시	720	48.0
	학생	152	10.1		중소도시	690	46.0
	무직/퇴직	207	13.8		농어촌	90	6.0
	전체	1,500	100.0		전체	1,500	100.0

2.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은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5점 척도로 주관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 또는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평균 3.3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 3.91점으로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3.18점으로 보통 수준에 불과해 세 가지 인식 수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하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정작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인식

	N	최소값	최대값	M	SD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1,500	1	5	3.39	0.708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1,500	1	5	3.91	0.665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1,500	1	5	3.18	0.889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집단은 성별, 노인과의 접촉 경험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9.756, p<.01$), 노인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노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16, p<.05$). 그 외의 응답자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N	M	SD	F(t)
성별	남	743	3.44	0.704	9.756**
	여	757	3.33	0.708	
연령대	20대	306	3.35	0.652	1.676
	3,40대	670	3.37	0.723	
	50대이상	524	3.43	0.719	
교육수준	고졸이하	1,006	3.39	0.701	0.055
	대학이상	494	3.38	0.724	
지역규모	대도시	720	3.35	0.727	2.944
	중소도시	690	3.40	0.702	
	농어촌	90	3.53	0.565	
노인과의 접촉경험	자주 미접촉	669	3.34	0.692	5.416*
	자주 접촉	831	3.42	0.719	
근로유무	무	626	3.38	0.687	0.272
	유	874	3.39	0.723	
노인함께 근로유무	무	1,372	3.38	0.710	0.721
	유	128	3.44	0.684	
Total		1,500	3.39	0.708	

**p<.01, *p<.05

의미분별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의 항목별 특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20가지 대칭되는 형용사 중에서 일반국민들이 특히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항목은 ‘믿을 수 있다’, ‘착하다’, ‘친절하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47점, 3.42점, 3.34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항목은 ‘보수적이다’, ‘쇠약하다’, ‘고지식하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32점, 2.41점, 2.51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항목(3점 초과)은 8개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항목(3점 미만)은 12개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태도 항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국민의 노인의 특성에 대한 항목별 태도

	N	최소값	최대값	M	SD	순위
어리석다 - 현명하다	1,500	1	5	3.23	0.807	
불친절하다 - 친절하다	1,500	1	5	3.34	0.832	+3
무식하다 - 유식하다	1,500	1	5	2.95	0.712	
믿을수없다 - 믿을수있다	1,500	1	5	3.47	0.750	+1
이기적이다 - 관대하다	1,500	1	5	3.05	0.934	
지저분하다 - 깨끗하다	1,500	1	5	2.87	0.760	
소극적이다 - 적극적이다	1,500	1	5	2.76	0.856	
비우호적이다 - 우호적이다	1,500	1	5	3.11	0.808	
지루하다 - 재미있다	1,500	1	5	2.77	0.812	
쇠약하다 - 건강하다	1,500	1	5	2.41	0.843	-2
착하지않다 - 착하다	1,500	1	5	3.42	0.736	+2
고지식하다 - 융통성있다	1,500	1	5	2.51	0.874	-3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1,500	1	5	3.26	0.874	
보수적이다 - 진보적이다	1,500	1	5	2.32	0.822	-1
매력이없다 - 매력적이다	1,500	1	5	2.74	0.721	
참을성없다 - 참을성있다	1,500	1	5	3.25	0.916	
비관적이다 - 낙천적이다	1,500	1	5	2.96	0.750	
불평이많다 - 불평이없다	1,500	1	5	2.75	0.817	
비생산적이다 - 생산적이다	1,500	1	5	2.65	0.739	
우울하다 - 즐겁다	1,500	1	5	2.77	0.728	

앞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달리 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특성별로 인식수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표 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집단은 연령대, 노인과의 접촉경험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post hoc 테스트 결과 20대 집단에 비해 50대 이상의 집단이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8.245, p<.001$),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수준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일하는 노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052, p<.05$). 그 외의 응답자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N	M	SD	F(t)
성별	남	743	3.92	0.689	0.777
	여	757	3.89	0.641	
연령대	20대	306	3.82	0.670	8.245***
	3,40대	670	3.88	0.647	
	50대이상	524	4.00	0.676	
교육수준	고졸이하	1,006	3.89	0.673	2.323
	대학이상	494	3.95	0.649	
지역규모	대도시	720	3.89	0.686	0.709
	중소도시	690	3.91	0.666	
	농어촌	90	3.98	0.449	
노인과의 접촉경험	자주 미접촉	669	3.86	0.645	6.052*
	자주 접촉	831	3.95	0.679	
근로유무	무	626	3.88	0.706	2.336
	유	874	3.93	0.634	
노인함께 근로유무	무	1,372	3.90	0.670	1.167
	유	128	3.97	0.614	
Total		1,500	3.91	0.665	

***p<.001, *p<.05

일반국민이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별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신뢰성’으로, 5점 만점에 약 3.54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업무의 성실성(3.48점), 조직에의 헌신성(3.33점)으로 나타났다. 성실함과 신뢰성, 헌신성 등은 전통적으로 노인 인력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심리적 태도들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창의성(2.79점), 사고의 유연성(2.82점)으로 나타나, 사고능력과 관련해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역시 약간 낮은 수치를 보여(2.85점), 근로 노인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인력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15개 영역 중에 보통 이하의 인식 정도를 보인 항목은 총 6개 항목이며, 그 외에는 모두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6 일반국민의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신뢰성	1,500	1	5	3.54	0.649	+1
조직에 대한 헌신성	1,500	1	5	3.33	0.767	+3
업무수행의 성실성	1,500	1	5	3.48	0.762	+2
생산성	1,500	1	5	2.85	0.762	-3
몰입력	1,500	1	5	2.95	0.787	
창의성**	1,500	1	5	2.79	0.844	-1
사고의 유연성**	1,500	1	5	2.82	0.786	-2
업무의 즉흥적 수행**	1,500	1	5	3.24	0.783	
스트레스**	1,500	1	5	3.15	0.772	
동기부여**	1,500	1	5	2.97	0.765	
훈련의지**	1,500	1	5	2.94	0.780	
대인기술	1,500	1	5	3.26	0.743	
고객관리기술	1,500	1	5	3.06	0.754	
기술과 능력	1,500	1	5	3.02	0.729	
리더십	1,500	1	5	2.90	0.704	

항목중 ** 표시는 역산처리하였음

3. 노인과 함께 일하는 국민의 일반적인 근로 노인 및 동료 노인에 대한 인식 수준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은 집단이 노인에 대한, 그리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도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므로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측정하는 15가지 항목에 있어 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현재 노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가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특히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신뢰성, 조직에의 헌신성, 성실성, 생산성, 몰입력, 동기부여, 기술과 능력 보유 등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서 신뢰성, 조직에의 헌신성, 성실성 등 전통적으로 노인 인력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심리적 태도이면서, 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높은 정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산성 등 상대적으로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항목 중 일반적으로 약간 낮은 평균수치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과의 근로 유무에 따른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노인 함께 근로 유무	N	M	SD	t
신뢰성	무	1,372	3.52	0.652	-2.601**
	유	128	3.68	0.601	
조직에 대한 헌신성	무	1,372	3.31	0.766	-3.165**
	유	128	3.53	0.752	
업무수행의 성실성	무	1,372	3.46	0.761	-3.536***
	유	128	3.71	0.744	
생산성	무	1,372	2.83	0.760	-3.830***
	유	128	3.09	0.747	
몰입력	무	1,372	2.93	0.790	-3.108**
	유	128	3.16	0.726	
창의성**	무	1,372	2.78	0.846	-1.565
	유	128	2.91	0.808	
사고의 유연성**	무	1,372	2.81	0.790	-1.581
	유	128	2.93	0.744	
업무를 즉흥적 수행**	무	1,372	3.24	0.780	0.605
	유	128	3.20	0.814	
스트레스**	무	1,372	3.15	0.765	-0.246
	유	128	3.16	0.849	
동기부여**	무	1,372	2.96	0.767	-1.974*
	유	128	3.10	0.741	
훈련의지**	무	1,372	2.93	0.782	-1.699
	유	128	3.05	0.756	
대인기술	무	1,372	3.25	0.747	-1.148
	유	128	3.33	0.700	
고객관리 기술	무	1,372	3.06	0.754	-1.437
	유	128	3.16	0.758	
기술과 능력	무	1,372	2.99	0.725	-3.932***
	유	128	3.26	0.734	
리더십	무	1,372	2.90	0.702	-1.013
	유	128	2.96	0.725	

항목중 ** 표시는 역산처리하였음

***p<.001, **p<.01, *p<.05

기 획 주 제

노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일하는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집단 간 차이일 뿐 이를 노인과의 공동 업무에 의한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인과의 공동업무 전 일반적인 노인인력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회상 질문하였고, 공동 업무 후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노인과 함께 일하기 전 일반적인 노인인력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58.6%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4%,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7.1%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일한 후의 일반적인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변화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8%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노인과 공동업무 전후 인식변화

		공동업무 후 고령인력 인식변화			전체
		부정적 변화	변화없음	긍정적 변화	
공동업무 전 고령인력 긍정적 평가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0	1	0	1
		0.0%	100.0%	0.0%	0.8%
	별로 그렇지 않다	0	5	3	8
		0.0%	62.5%	37.5%	6.3%
	보통	2	33	9	44
		4.5%	75.0%	20.5%	34.4%
	다소 그렇다	0	53	17	70
		0.0%	75.7%	24.3%	54.7%
	매우 그렇다	0	5	0	5
		0.0%	100.0%	0.0%	3.9%
전체		2	97	29	128
		1.6%	75.8%	22.7%	100.0%

노인인력과 함께 근무하기 이전의 인식과 이후의 인식을 교차분석한 결과, 노인인력과 함께 근무하기 이전에 노인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 응답자의 경우는 함께 근무한 이후에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높은 경우는 노인인력에 대해 ‘별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응답자들로, 이 중 약 37.5%가 노인



과 함께 일한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결과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단, 노인인력과 함께 근무하기 이전에 노인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한 이후에도 인식이 변화 없다고 응답한 집단(<표 8>에서 진하게 표시)의 경우 동료노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9 노인과의 공동업무 후 부정적 인식(보통 이하) 가진 응답자의 동료노인에 대한 인식적 태도

항목	공동업무 후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t
신뢰성	부정적	41	3.4	0.771	-4.089***
	긍정적	87	3.8	0.437	
조직에 대한 헌신성	부정적	41	3.3	0.867	-2.621*
	긍정적	87	3.6	0.698	
업무수행의 성실성	부정적	41	3.5	0.952	-2.660**
	긍정적	87	3.9	0.581	
생산성	부정적	41	2.8	0.749	-4.431***
	긍정적	87	3.4	0.631	
몰입력	부정적	41	2.9	0.877	-2.580*
	긍정적	87	3.3	0.701	
창의성**	부정적	41	2.7	0.879	-1.639
	긍정적	87	2.9	0.759	
사고의 유연성**	부정적	41	3.0	0.742	0.732
	긍정적	87	2.9	0.748	
업무의 즉흥적 수행**	부정적	41	3.1	0.853	-0.682
	긍정적	87	3.3	0.810	
스트레스**	부정적	41	3.1	0.937	-0.509
	긍정적	87	3.2	0.831	
동기부여**	부정적	41	3.1	0.818	-0.839
	긍정적	87	3.2	0.745	
훈련의지**	부정적	41	2.9	0.781	-2.175*
	긍정적	87	3.2	0.724	
대인기술	부정적	41	3.3	0.789	-0.929
	긍정적	87	3.4	0.623	
고객관리기술	부정적	41	3.1	0.787	-1.511
	긍정적	87	3.3	0.730	
기술과 능력	부정적	41	3.1	0.831	-2.150*
	긍정적	87	3.4	0.706	
리더십	부정적	41	2.9	0.787	-0.354
	긍정적	87	3.0	0.731	

항목중 ** 표시는 역산처리하였음

***p<.001, **p<.01, *p<.05

동료 노인과 함께 일하기 전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함께 일한 후에도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없거나, 함께 일하기 전 노인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함께 일한 후에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거나 변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동료 노인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함께 일한 후에 일반적인 노인 인력에 대해 비공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동료 노인에 대해 신뢰성, 현신성, 성실성 등에 대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 항목들은 대체로 노인인력의 장점으로 드러난 항목들이므로 나타났다. 동료 노인과 함께 일한 후에도 노인인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또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인식 맥락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4.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과 같이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를 정의하였으며,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일자리 문제의 관심도’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 접촉 특성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변수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노인 접촉 특성 변수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 변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일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의거하였다. 회귀분석 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 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분석 상의 문제가 의심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회귀분석 포함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변수값	
종속변수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1(매우 부정적)~5(매우 긍정적)	
	노인일자리 문제의 관심도	1(전혀 무관심)~5(매우 관심)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	더미변수(0=여성, 1=남성)	
	연령	만 연령(세)	
	교육수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학이상	
	지역규모	대도시	더미변수(놓어놓 기준)
		중소도시	더미변수(놓어놓 기준)
	근로유무	더미변수(0=근로 무, 1=근로 유)	
노인 접촉 특성	노인접촉빈도	월 접촉횟수(회)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1(전혀 좋지 않다)~5(매우 좋다)	
	동료 노인 유무	더미변수(0=무, 1=유)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	1(매우 부정적)~5(매우 긍정적)	
	노인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태도	항목별 태도의 합(점)	
	노후 근로 희망 유무	더미변수(0=무, 1=유)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과 연령 변수가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beta = -.059, p < .05$),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beta = .094, p < .01$) 근로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접촉 특성 중에서는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beta = .144, p < .001$), 노인과 자주 접하는지를 측정하는 접촉빈도보다는 노인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노인에 대한 항목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beta = .083, p < .05$), 그리고 노후에 근로를 희망할수록($\beta = .289, p < .001$) 근로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동의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문제 관심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가 노인일자리 문제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beta = .399, p < .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기 획 주 제

높을수록($\beta = .073, p < .05$)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문제가 자신의 노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접촉 특성 중에서는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와 동료 노인 유무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47, p < .01$), 함께 일하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 일자리 문제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beta = .051, p < .01$). 동료 노인을 통해서 노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beta = .078, p < .01$), 그리고 노후에 근로를 희망할수록($\beta = .084, p < .01$)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문제가 곧 응답자 본인의 노후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1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노인일자리 문제 관심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일자리 문제 관심도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	-.078	-.059*	-.065	-.037
	연령	.004	.094**	.025	.399***
	교육수준	.027	.039	.068	.073*
	지역규모-대도시	-.014	-.011	.040	.022
	지역규모-중소도시	.014	.011	.153	.085
	근로유무	-.027	-.020	-.040	-.022
노인 접촉 특성	노인접촉빈도	.001	.022	.002	.037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175	.144***	.078	.047#
	동료 노인 유무	-.081	-.035	.160	.05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이미지	.042	.045	.098	.078**
	노인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태도	.007	.083**	.005	.046
	노후 근로 희망 유무	.400	.289***	.157	.084**
R Square(Adj. R Square)		.132(.123)		.184(.176)	
상수		2.171		.686	
F값		15.516***		22.990***	

***p<.001, **p<.01, *p<.05, #p<.10



한편, 지역규모, 응답자의 근로 유무, 노인접촉빈도 등은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산분석 결과에서 노인과의 접촉빈도에 따라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지만,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고 변수간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것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단순한 노인과의 접촉빈도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노인을 경험하는 것이나, 선행연구와 같이 노인과의 관계의 질이 긍정적인 것이 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비해 높았음에 반해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일하는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정작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일반적인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다’, ‘착하다’, ‘친절하다’ 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수적이다’, ‘쇠약하다’, ‘고지식하다’ 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신뢰성, 성실성, 헌신성 등의 심리적 태도를 장점으로 꼽고 있었지만 창의성, 사고의 유연성 등의 사고능력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넷째, 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신뢰성, 헌신성, 성실성, 생산성, 몰입력, 동기 부여, 기술과 능력 보유 등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동료노인과 함께 일하고 난 후에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은 거의 없었지만, 특히 노인과 함께 일하기 전후 모두 노인인력에 대해 비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

과 비교하여 동료 노인에 대하여 신뢰성, 헌신성, 성실성 등 대체로 노인인력의 장점으로 드러난 항목들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태도, 노후 근로 희망 유무 등이,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족 중 노인과의 관계 및 동료노인 유무,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노후 근로 희망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환기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행사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주관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보다 큰 추진동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이었던 것을 볼 때, 일반적인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쇠약, 보수적, 고지식 비생산적)보다는 일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신뢰성, 헌신성, 성실성 등)에 대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일하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인 저연령층,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집단 등 특히 일하는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집단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인식개선 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며, 세대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노인인력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 조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식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정례적인 사회조사 실시를 통한 노인인력에 관한 인식개선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국민인식 기타 결과>

표 12 본인의 근로 이유 및 노인의 근로 이유에 대한 생각

	본인의 근로 이유		노인의 근로 이유에 대한 생각	
	N	%	N	%
경제적 수단	836	92.7	904	60.3
건강유지 수단	7	0.8	209	13.9
사회참여 수단	19	2.1	77	5.1
관계형성 및 소외감 해소수단	3	0.3	62	4.1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 수단	19	2.1	63	4.2
여가시간 활용수단	7	0.8	47	3.1
지식기술 활용의미	1	0.1	11	0.7
일을 통한 즐거움	10	1.1	126	8.4
전체	902	100.0	1,499	100.0

표 13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노력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전체	0 0.0%	38 2.5%	311 20.7%	968 64.5%	183 12.2%	1,500 100.0%

표 14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우선적 인식개선 필요내용

	N	%
노인인력 높은 생산성	358	9.8
노인의 경륜	329	9.0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상	509	13.9
노인의 높은 근로욕구	602	16.5
노인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	695	19.0
일자리 참여로 세대간 통합	460	12.6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 필요성	286	7.8
노인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409	11.2
기타	1	0.0
전체	3,649	100.0

참/고/문/헌

- 김윤정·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지형·장윤옥(200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83-99.
- 모경빈(1990). 노인에 대한 농촌여성의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간호과학, 2, 119-142.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경하(2008). 중소기업체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백문화·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5(1), 1-14.
- 원영희·김동배·이금룡·한정란(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 윤성혜(1990).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21-239.
- Palmore, E.B.(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Y: Springer Publishing Co.
- Hummert, M.L., Garstka, T.A., Shaner, J.L. & Strahm, S.(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 제고 방안

| 박경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정책의 근거 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노인복지법을 분석하였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 설정으로 구분되며, 법적실효성 정도는 분석대상 법률의 법문에 표현된 강행규정 혹은 임의 규정, 국가재정부담 여부, 벌칙조항 적용 여부 등 3가지 기본원칙과 객관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인사과정 전단계에 걸쳐 연령차별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관련규정 위반시 벌칙조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적실효성이 높고, 고용할당제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구속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이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법적실효성이 낮고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소극적 조치만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여서 유인체계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 고용제도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자격 기준을 수반하고 있는 등 고용촉진 효과가 낮고 직업능력개발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법적 수혜를 강화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보장 관련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관계 법령의 법적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5세 이상~79세 미만에 속한 경제활동인구 중 49%의 고령자들이 실제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다시 65세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양분해 보면 젊은 고령층의 61%는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keh222@kordi.or.kr)

기 획 주 제

지만 나이드은 고령층에서는 35.6%로 급격하게 고용률이 떨어져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통계청하계2009).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방하남 외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평균 연령은 54세 정도이며 노동시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퇴직연령은 평균 68세 정도여서 고령자들은 14년 기간 동안 다시 제 2의 근로생애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관련 법제도에는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설계되어 있다. 고령자의 고용상태를 촉진 혹은 유지하는 정책수단들은 조기퇴직 억제, 정년제 정착, 노동시장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을 강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기준고용률 제도와 정년연장 및 재고용 권장, 연령차별 금지 내용,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에 필요한 고용정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재고용을 위한 각종 장려금 제도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으로 대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취업을 희망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이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두는 등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내용이 구체화됨으로써 법적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었다(제 4조의 4). 2004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바꾸어 업종별로 다른 지원기준율을 적용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였다.¹⁾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들이 고령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계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1) 종래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지원요건인 고령자고용비율을 42%로 높게 하여 장려금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로 낮게 하여 제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 업종별 고령자고용비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7%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고령자 관련 장려금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1992년부터 제정·시행보험고령자고용촉진법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성과이지 않아 어떠한 요인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나타나 성과이는지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다(김태정, 2008; 고준기 2007). 1991년부터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고용촉진장려금이 기준과 내용을 변경하면서 발전해 왔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직 고령자의 고용효과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장정책은 반차별입법(anti-discrimination), 고용할당제(quota system), 보조금 고용(subsidized work) 외에도 우선권 설정, 유보고용(reserved work), 보호고용(sheltered work)과 같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자 노동관련법제도가 목적에 맞게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통계수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법적 실효성 논의에서 중요한 기초 근거가 된다. 그런데 법적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수치 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정책의 고용효과를 총량적으로 판단할 만한 통계자료를 가지지 못한 현실에서 그러한 수치적 근거(numerical basis)는 개별적 제도 내용에서 제한적인 의미로서 다룰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고령자 고용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 결과를 의미하는 통계수치에 근거한 평가에 치우치기 이전에 법적 실효성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법의 실효성 개념은 법이 요구하는 바가 실제로 준수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사실적 효력을 말한다(서정희, 2009: 10). 하지만 현행 법조문이 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실효성 개념은 법규범 준수여부와 정도에 치우친 개념이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자체만으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고령자의 고용문제 해결에 법률 또는 개별 법조항이 실효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실

기 획 주 제

효성에 관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통계수치를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 설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법적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노인복지법을 평가하고자 한다.

표 1 고령자 고용보장 제도별 관련법규

고용정책 구분	관련법률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할당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금고용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능력개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우선권설정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호고용	사회적 기업 육성법 노인복지법

II. 법적 실효성 개념과 제도구성

1. 법적실효성 개념과 조건

법개념에서 법률적 효력은 정해진 입법절차에 따라 법규범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규범이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 사실적 효력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다(홍준형, 2006). 사실적 효력은 법률이나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물론 어느 정도 법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적 효력을



판단하는데 머무는 것만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사용하고 있는 법의 실효성은 법규범 자체의 준수(following)와 순응(compliance)이라는 과정적 개념을 넘어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결과를 따지는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 ‘법이 요구하는 바가 준수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양건, 2000).

고용보장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단지 생계유지만이 아닌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은 노동에 포함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통된 이해이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통한 평등 실현과는 차원이 다른 독립성을 가진 개념이다(심재진, 2009: 226). 개인이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인 사회권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권에 기초한 노동권의 개념은 1) 배제된 영역에 진입할 권리, 2) 낙인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3)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과 소득을 확보할 권리를 포함한다(이가옥·이지영, 2005).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제 32조 근로의 권리, 제 33조 근로 3권)과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복지수급권(제 34조) 조항을 두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④)”는 규정을 통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사회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고 사법적 구제나 국가의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도 학자마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권영성, 1995).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은 프로그램권리설과 법적권리설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권리설은 사회권 조항을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헌법규정만으로 국가가 정책을 실시하지 않다고 해서 재판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반면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입장이 다시 달라지는데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권을 국가에게 강제할 수 없는 추상적인 권리이지만 법적 의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두 주장과 달리, 구체적 권리설은 헌법규정을 구체화 시킨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회권은 직접 효력을 미치기

에 국가의 부작위는 권리의 침해로 판단한다.

서정희(2009)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5가지 일반 원칙, 즉 강행규정 원칙, 국가재정부담 원칙, 무조건성 원칙, 적절성 원칙, 별칙조항수반 원칙을 제시하고 반차별입법, 보조금 고용, 고용할당제, 직업재활, 우선권 설정, 유보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으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보장제도가 얼마나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이분법적으로(높다, 낮다)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 설정, 보호고용 제도로 구성된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을 강행규정, 국가재정부담, 별칙조항 3가지 일반원칙으로 평가한다. 3가지 일반원칙에서 강행규정 원칙과 별칙조항 원칙은 법문형식에서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준이고 판단기준도 ‘규정의 존재 유무’이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그 책임에 적극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의 비용부담 수준은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제도별로 다르게 기준을 세워 법적 실효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용한 지침이다.

법률은 기본권 제한을 하는 형식일 뿐 아니라 사회권의 실효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가 제정한 형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들이 우선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행규정은 사회권의 법적 실효성 논의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원칙이며 “~해야 한다”는 법문형식으로 나타낸다(서정희, 2009). 강행규정은 국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국가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의무화 되는 반면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는 법문형식에서 보이듯이 국가의 재량이 크고 적극적인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을 형식을 띤 규정을 법문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도 “노력하여야 한다” 식으로 명시된 노력의무규정 역시 구체화된 국가의무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규정과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에 강행규정이 있더라도 명령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도 구체성이 적시되지 않아 법률이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정도는 사적 부문과 대비될 수 있다. 고령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비용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데 부담수



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재정부담 원칙은 국가가 비용의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²⁾

또한 사적행위자를 강제하는 별칙조항도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법기제이다. 고용주와 같은 사적행위자를 강제하는데 강행규정의 법률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행에 형벌을 부과하는 별칙조항을 둔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려하도록 하는 ‘고령자 기준고용률’과 같은 고용할당제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는 별칙조항이 없다면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 고령자 고용정책 구성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령차별금지, 고용할당제, 보조금 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 설정, 보호고용을 구성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 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식이 고령자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전제로 이를 금지하려는 반차별입법(anti-discrimination)이다. 2008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모집·채용은 물론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 대한 기업인사 연령차별금지를 입법화하였다. 2009년도에는 모집·채용부문을 우선 적용하고 2010년도부터 그 밖에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³⁾

고용할당제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근로자 비율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⑤)을 근거로 시행령에(제 3조) 업종별로 기준 비율을 제시하였는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조업의 경우는 100분의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외의 산업은 100분의 3을 고령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2) 서정희(2009)는 국가가 급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높다’로 그 이하이면 ‘낮다’로 측정하였다.
3) 개정법 명칭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기 획 주 제

보조금 고용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에게 고용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조금 고용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시행령 제25조)과 고용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시행령 제 26조) 등 다양한 지급내용이 있다.

직업능력개발 제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령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거나 사업주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를 지닌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직업훈련 관련법’을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제도 실시를 규정해 두고 있다(제6조, 제7조)

우선권 설정 제도는 비고령층에 비해 고령집단이 고용상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직업훈련 관련법에 명시된 우선고용직종 선정과 고용, 노인복지법 25조 생업지원이 이러한 제도에 속한다. 우선고용직종 제도는 선정된 직종분야에서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또는 사업주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호고용은 특수작업장(special workshop), 고립작업장(enclaves), 사회적 기업(social firm)과 같이 보호된 환경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서정희, 2009).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2)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직업훈련 관련법」에 따른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Ⅲ. 고령자 고용관련법의 법적 실효성 정도

1. 연령차별금지

연령은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및 고용형태와 같이 고정적 요소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나 연령차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박종희, 2009). 헌법 11조에는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법 규정하고 있을 뿐 연령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 차별문제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정년제가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은 모집·채용·근로조건·근로관계종료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이루어 지는 직접적·간접적인 차별을 말한다(고준기, 2007: 213). 만약 연령차별금지가 선연적인 차원에서 금지하는데만 그치거나 특별한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정책기본법’(2009.10.9 전부개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제 7조) 연령차별금지와 고용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008년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에서는 연령차별 금지 규정을 입법화 하고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관련절차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개정법은 기존 법과 달리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규정하고 있어 차별보호의 범위는 물론 효력도 강화되었다.

또한 고용상 전반적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연령차별을 강행규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더욱 커졌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4조의 4-①에서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모집·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차·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강행규정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강행규정을 통한 연령차별 금지로 법적 실효성이 높지만 직무성격, 근속기간 차이, 정년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사항을 전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연령차별을 방기할 수도 있다.⁴⁾ 그러나 개정법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연령차별금지

4)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차별금지의 예외’ 사항은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이다.

규정을 위반시 적용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되었다.

퇴직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정책의 효력이 커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정년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수정하여 정년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예: 임금피크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정년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 제도와 맞물려 적법성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김태정, 2008). 정년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정년을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근로자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정년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에 정년제를 적법하게 보는 측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보다 일정한 기준을 세워 동등하게 배제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개인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연령차별적 요소를 무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법 제4조의5 제3호)를 연령차별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19조)”고 규정하여 구체적 연령에 도달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법문형식에서 보듯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력의무규정에 불과하여 법적 실효성이 나타나기 어렵다. 노동부에서 2008년 300인 이상 1,9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기업의 정년연령은 57세 정도로 나타나 대다수 기업이 정년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60세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75%는 직급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평균정년을 보이고 있다.

표 2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 평균정년

구분	단일	평균 정년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사업장수	57.14	5	655	86	168	360	65	237	17	3	12	4	32	1,644
	근로자수		5,231	756,113	105,684	194,506	486,541	71,866	23,746	9,293	182	6,333	2,057	19,201	1,981,753
300-499인	사업장수	57.37	3	268	35	67	148	31	125	8	2	6	2	20	715
	근로자수		1,253	102,727	13,875	25,361	57,427	11,841	48,164	3,026	682	2,135	798	7,975	275,264
500-999인	사업장수	57.09	1	214	28	55	113	19	69	9	1	6	2	7	524
	근로자수		855	147,740	18,219	39,519	76,572	13,099	46,897	6,267	500	4,198	1,259	4,941	360,066
1000인 이상	사업장수	56.82	1	173	23	46	99	15	43					5	405
	근로자수		3,123	505,646	73,590	129,626	352,542	146,926	128,685					6,285	1,346,423

※ 평균정년 : 연령별 사업장수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 [(각 연령×사업장수의 합계)/단일정년 전체사업장수]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2008).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 소폭 상승세 유지.

벌칙조항은 사적행위자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법적 기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정년제도 운영현황이나 정년연장계획을 기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해 불응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⁵⁾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과태료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에게 귀속되는 부담수준은 매우 미미하다.

5)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도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고용할당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12조, 시행령 제 10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산업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0조). 하지만 기준고용률 준수는 구체적으로 사업주를 규제하고 있지 않고 단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낮다.

사업주는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법문화되어 있지만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못 미치거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법 13조).

사업주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른바 적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확대를 요청하고(법 제17조),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확대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이와 같은 조치도 일종의 벌칙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의무이행을 강제할 만큼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준고용률 이행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심리적 강제조치 외에는 적절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준기, 2007). 외환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은 고용률이 3%를 넘어 선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고용률 목표 제시는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허재준, 2002).

3. 보조금고용

보조금고용은 사용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면서 갖는 부담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23조에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이 약한 임의규정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정해 두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구체적 효력을 더욱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시행령 25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시행령26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시행령 28조)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고용장려금 제도는 저숙련 고령자의 취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대다수 고령자는 이러한 제도의 기여와 상관없이 취업이 이루어졌고 청년층 고용을 대체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박종희, 2005).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효율성 평가에서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장지연·김정우(2002)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이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2.3%에 이르고,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고령자 대신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8.7% 수준으로 나타나 사중손실은 높지만 대체효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기준율을 업종별 6%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바꾸어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왔다.⁶⁾ 오민홍 외(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지원기준율의 제도변화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 보다 총량적으로 고령자 고용증가 폭이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는 지원기준율이 하향 조정된 분야가 존재하였지만 수혜업체에서 순고용 효과를 더 크게 보였다. 이 결과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순고용 효과를 낮춘다는 대다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자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6) 2004년 변경한 업종별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기준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기준율
• 제조업 • 통신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16%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폐기물 수집분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4%
• 농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 부동산업	42%
그 밖의 업종	7%

기 획 주 제

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 신규로 일자리를 획득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유지나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준기, 2007). 2004년 이후 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현황, 즉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을 보면 기업에서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이나 재고용 지원제도를 활용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진입장벽은 매우 크고 현행 보조금고용제도로써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종류별 지원건수 및 지원인원(2006)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48,438	229,121	360.3
고령자다수지원금	46,830	226,590	342.6
고령자신규지원금	14	29	0.9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	1,594	2,502	17.6

* 자료 : 오민홍(2007) 외, 75p.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실업상태로 있는 고령자의 재고용을 위해 사업주가 노력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고, 동법 21조의 2에서는 만약 사업주가 이와 관련해서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보장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하는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정년연장 장려금’⁷⁾과 ‘정년퇴직계속고용장려금’⁸⁾을 마련해 두고 있다.

- 7) 정년연장장려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준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때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이는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만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8)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에서 “계속고용”이라 함)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때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직무중심의 성과급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하다. 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기업이 지는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정년에 이르기 이전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령이 54세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자격이 있으며 최대 6년 간 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우리나라에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형이 주를 이루는데 정년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정년 연령을 연장하고 정년 이전 특정 연령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제가 강행규정으로 입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기업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고용보장이라는 제도의 본 취지에 자칫 역행할 수도 있다(박종희, 2005).

정년연장, 신규고용 및 재고용 지원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보조금 고용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고령자 보조금 고용제도

보조금 유형	고용방식	적용법	보조금내용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정년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계속고용장려금
	신규고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재고용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임금보전수당	정년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4.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고령자들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의 확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8조).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직접 법문화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제 6 조). 그리고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⁹⁾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시된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로 희망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사업주의 신청(혹은 고령자)에 의해 현장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연수비용과 고령자에게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 5 조). 이 밖에도 여러 개별법에서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우선 실시할 것(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 10조)과 연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차별을 금지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조).

2009년 한 해 동안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지원이 이루어진 규모는 8억 8천만원 정도이며, 이 중에서 3억 8천만원 정도는 참여자 개인에게 지원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55~59세 사이 36%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50~54세에 속하는 경우 33%로 나타나 은퇴 전후 연령층이 진로전환을 위해 교육훈련에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연령층은 참여자 중 8%에 불과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훈련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자단기적응훈련은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직종을 정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사보조원, 간병인, 산모와 신생아돌보

9)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 베이비시터, 전문간병인 등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에 교육참여가 치중되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이러한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부록 참고).

표 5 2009년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구분	참여인원	지원금액	
		참여자	기관(105개)
전체	649	385,410,000	499,500,000
50-54세	212(33%)		
55-59세	233(36%)		
60-64세	155(24%)		
65세 이상	49(8%)		

5. 우선권 설정

우선권 설정은 일정 기준 이상에 속하는 연령층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생업지원제도(노인복지법 25조)와 우선고용직종선정제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를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생업지원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생업지원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5조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별로 존재하는데, 법문 형식이 강행규정(~해야 한다), 노력의무규정(~노력하여야 한다)으로 다양하여 개별법률 차원에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권을 설정해 두고 있는 다른 개별법과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생업지원은 실효성과 형평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지원영역이 매점과 자동판매기로만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은 구체화된 시행령이 없고 매점면적, 운영관련된 세부내용에서 구체성이 낮아 법적 구속력이 매우 낮다.

기 획 주 제

표 6 대상별 생업지원 제도의 법안 비교

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의 2)	장애인 복지법(42조)	노인복지법(25조)
법문형식	강행규정	노력의무조항	강행규정
시행령	제88조의3	제27조	없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지원항목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류 판매	매점 / 자동판매기
대상기관의 범위 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매점면적	33제곱미터 이하	15제곱미터 이하	규정없음
기타 운영관련 조항	허가 및 위탁을 받은 대상이 직접 사업에 종사 권고 (법68조의 2, ②항)	허가 및 위탁을 받은 대상이 직접 사업에 종사 권고 (법42조, ④항)	규정없음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개를 분석대상으로, 매점, 자판기 설치에 따른 우선허가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노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시설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생업지원 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노인 허가현황

	합계	매점(개소)			자동판매기 (대)
		복합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기타	
전체	1,388	218	36	2	1,132
노인허가 개소수 (비율)	53 (3.8)	14 (6.4)	6 (16.7)	0 (0.0)	33 (2.9)
청사	34	3	0	0	31
교육문화 체육시설	19	11	6	0	2
공원	0	0	0	0	0
기타	0	0	0	0	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2009).



고령자 고용보장 촉진을 위한 또 다른 우선권 설정제도는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발이었다. 그러나 직접적 채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보기가 어렵다(박종희, 200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고시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업주는 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시행령 12조).¹⁰⁾

표 8 우선고용직종 변화과정

구 분	선정내용
제 1차 선정: 1992	• 단순업무 중심으로 선정
제 2차 선정: 1995	•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물품관리원 등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직종 보조직 포함
제 3차 선정: 1997	• 실태조사를 통해 20개 직종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통역안내원, 보일러운전원, 전화수리원, 문화재관리원 등이 신규로 포함
제 4차 선정: 1999	• 고령자의 직업능력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 17개 직종이 추가로 선정됨. 사회교육강사, 노인대학강사, 가정학원강사등의 강사직과중소기업경영기술자문가, 인력개발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농업 및 영림자문가 등 전문직이 포함됨
제 5차 선정 : 2003	• 공공부문 70개와 민간부문 90개의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였음

10) 시행령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 획 주 제

김수근(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기술, 전문, 사무 관련직은 총무 및 인사 부서관리자, 일반사무원, 총무 및 인사사무원, 고객관리사무원, 기계공학기술자에 직업 분포가 높고, 생산/단순노무직은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시설관리원 등에 채용 비중이 높다.

표 9 공기업 고령자 채용 직종

기술/전문/사무관련직			생산/단순노무관련직		
응답자 합계	228	100.0	응답자 합계	78	100.0
총무및인사부서관리자	38	16.7	경비원	20	25.6
일반사무원	27	11.8	청소원	19	24.4
연구원	19	8.3	운전원	15	19.2
총무및인사사무원	7	3.1	시설 및 건물관리인	6	7.7
고객관리사무원	5	2.2	청사경계및방호원	4	5.1
기계공학기술자	5	2.2	안내원	2	2.6
기획 및 홍보부서관리자	5	2.2	조경원	2	2.6
감정평가사	3	1.3	청원경찰	2	2.6
강사	2	0.9	주방보조원	2	2.6
경리	2	0.9	공원관리원	1	1.3
교수	2	0.9	매표, 청소, 주차장관리원	1	1.3
사서	2	0.9	목공	1	1.3
장학사	2	0.9	보일러조작원	1	1.3
전산부서관리자	2	0.9	위생원	1	1.3
기타		46.9	차량관리원	1	1.3

* 자료 : 김수근, 2002.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은 고령인력에 대한 시장수요가 특정 직종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폭은 비고령자에 비해 매우 높다. 구직이 많은 상위 5개 직업에서 고령자 분포는 50.5%에 이를 만큼 일부 직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직종에서 우선권 선정이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표 10 고령구직자 규모 상위 5개 직업

직업	고령구직자	전체 고령구직자 대비 비율(%)	고령구직자	전체 고령구직자 대비 비율(%)	취업 경쟁률
생산관련 단순노무자	51,647	15.6	2109	8.4	24.5
경비 및 건물관리인	47,268	14.3	7723	30.6	6.1
청소원	42,381	12.8	5097	20.2	8.3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4,487	4.4	1117	4.4	13.0
주방보조원	11,537	3.5	804	3.2	14.3
합계	167,320	50.5	16850	66.9	

* 자료 : 워크넷 DB, 2006

* 주 : 취업경쟁률=고령 구직자 / 고령 구직자

* 박상철·김중진(2007)에서 재인용.

6. 보호고용

보호된 고용은 보호된 환경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서 대표된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인증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 2조). 여기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 11조의4).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형태들 가운데 정부의 직전 고용이나 비정부조직에 위탁에 의해 창출되는 보호된 시장의 일자리를 주로 가리킨다(한상진, 2005). 우리나라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해 왔는데, 노동부는 2004년도에 비영리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급속하게 확장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

기 획 주 제

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 2조)와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그 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주된 사업대상은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능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동계층으로 ①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②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여성가장, ③ 자활담당자가 지정한 심층상담 대상자(취업지원 경로 설정자), ④ 고령자, 장애인, 중퇴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표된다. 2003년도 시범사업 당시 전체 참여자의 9.7% 수준에서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3% 수준에 이르렀는데,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자는 전체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표 1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유형별 변화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일반인	702 (28.5)	2147 (48.4)	3078 (52.5)	5550 (52.5)	5662 (49.9)	17164 (49.4)
취업대상자	9(0.4)	21(0.5)	22(0.4)	70(0.7)	57(0.5)	179(0.5)
비취업대상자	0(0.0)	19(0.4)	6(0.1)	8(0.1)	5(0.0)	38(0.1)
일반수급자	32(1.3)	54(1.2)	72(1.2)	96(0.9)	78(0.7)	332(1.0)
장기실업자	1013 (41.1)	764 (17.0)	419 (7.2)	974 (9.2)	1263 (11.1)	4433 (12.8)
여성가장	101(4.1)	209(4.7)	260(4.4)	516(4.9)	579(5.1)	1665(4.8)
고령자	240(9.7)	556(12.4)	732(12.5)	1379(13.0)	1616(14.3)	4523(13.0)
장애인	123(5.0)	238(5.3)	368(6.3)	534(5.0)	538(4.7)	1801(5.2)
청년실업	201(8.2)	257(5.7)	308(5.3)	446(4.2)	360(3.2)	1572(4.5)
북한이탈주민	0(0.0)	1(0.0)	3(0.1)	11(0.1)	15(0.1)	30(0.1)
기타취약계층	45(1.8)	193(4.3)	590(10.1)	993(9.4)	1167(10.3)	2968(8.6)
전체	2466 (100.0)	4485 (100.0)	5858 (100.0)	10577 (100.0)	11340 (100.0)	34725 (100.0)

* 자료 : 윤정향(2007).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주로 50~60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23조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전제로 한 민간분야에서 개발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고령자 적합 공익형과 고령자적합 자립지향형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방식과 목표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소득욕구가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은 인건비가 한정된 공공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도에 19만 6천개 일자리 목표치를 초과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립을 전제로 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11%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실제 사업내용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표 12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구분	목표사업량(A)		배정일자리수(B)		수행일자리수(C)		
	사업량	비율	사업량	비율	사업량	목표대비 달성률 (C/A)	
합계	196,000 (228,500)	100%	264,531	135.0%	209,564	107%	
사회 공헌 형	소계	174,000 (205,284)	89%	239,876	137.9%	184,909	106.3%
	공익형	(142,437)		(170,582)	(119.8%)	(126,559)	(88.9%)
	교육형	(17,449)		(18,201)	(104.3%)	(15,902)	(91.1%)
	복지형	(45,398)		(51,093)	(112.5%)	(42,448)	(93.5%)
인큐베이터형 (창업모델형 포함)	12,400 (14,078)	6%	16,533	133.3%	16,533	(133.3%)	
인력과건형	9,600 (9,138)	5%	8,122	84.6%	8,122	(84.6%)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장관련 법률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 법적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혹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고령자 고용보장제도에 대해 고용관련 법률의 법적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행규정, 별칙조항, 국가재정부담 원칙으로 살펴 본 결과는 <표 13> 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인사과정 전단계에 걸쳐 연령차별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관련규정 위반시 별칙조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적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년제는 사업주의 노력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정년보장 효과가 법적 조치로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7세 정도로 나타나 법률에서 규정한 고용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고용할당제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구속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이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법적실효성이 낮다. 그리고 별칙조항을 두어 기업의 책임을 높여려는 의도가 있으나 처벌적 규정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내용공개 혹은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중단과 같은 소극적 조치만을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여서 사실상 사업주의 행위를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정년연장, 신규고용, 재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구성된 보조금 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국가재정부담으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를 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사업주의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자격 기준을 수반하고 있어 급여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비수급 기업으로 머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 제도가 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효과를 크게 가져올 만한 유인체계로서 기대하기가 어렵다.

넷째,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제도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법문화하고 있어 법적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선고용직종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



부의 고령자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노인생업지원, 우선고용직종 선정과 같은 우선권설정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고용보장 효과가 나타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우선고용직종에서 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강제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노인생업지원은 노인복지법 25조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에 노인이 혜택을 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고령자의 직업선택 폭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호고용은 취업욕구를 가진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장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필요도가 높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수익과 자립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강화되면서 보호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안정된 수익 확보와 같은 다면적인 사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표 13 실효성 측정

	연령차별 금지	고용 할당제	보조금고용	직업능력개발	우선권설정	보호고용
강행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차별금지:강행 •정년제:임의 	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임의 •임금보전수당: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고용촉진-국가책임:강행 -사업주책임: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업지원:강행 •우선고용직종-공공기관:강행 -민간기관: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강행 •사회적일자리:임의
벌칙 조항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가 재정부담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행 법체계에서 고령자의 고용보장제도의 법적 실효성과 제도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살펴보았듯이,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 대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에 그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에 부여된 책임은 명목적 수준에 머물고

기 획 주 제

있고 노동시장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가재정부담 원칙을 제도에 따라 설정해 두기도 하고 벌칙조항으로 시장의 행위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모두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기준고용률은 그 자체로 사업주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필요하다면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 규제가 아니고 제재의 강도도 약해서 사업주의 행위가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형식화 되고 상징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현행 고령자 고용보장 관련법의 법적 실효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고령자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실업률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지표 상에서 법률의 실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임의규정 법률양식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고령자의 고용보장 수준은 물론 고령자의 지식이나 경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증자료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들은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60세 정년 이전 연령에 평균적으로 퇴직하고 있고 앞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조기퇴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정년제를 강행규정으로 법률화하여 고령자의 고용보장 수단으로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강행규정화된 개정내용도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과 같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을 구속하는 기준고용률은 현재 임의규정 형태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여 고용보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할당제는 사업주가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벌금-지원금제도(levy-grant system)로 운영될 수 있는데(서정희, 2009),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확대를 요청해서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유인체계는 없다. 따라서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용률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우선고용직종에서 우선권 제도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도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제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사용주에게 생길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일부 국가재정부담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며 이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이나 재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 수준을 늘려 지원금 수준, 지원기간 등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훈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의 개인부담이나 기업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국가재정부담 수준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고용제도에 별칙조항수반 원칙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강행규정과 상호 연계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에게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책임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이를 소홀한 경우 과태료 같은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고용 직종에 대한 고령자 고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에서 고용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준기(2007).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 집문당.
- 권영성(1995).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수근(2002).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보고서. 중앙고용정보원.
- 김영문(2004).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25면.
- 김태정(2008). 중고령자의 고용확보와 연령차별금지법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vol. 20.
- 박상철·김중진(2007).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분석 및 재선정. 한국고용정보원
- 박종희(2009).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vol. 29(0).
- 박종희(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학」 6.
- 방하남 외(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서정희(2009).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재진(2009). 평등과 노동권에 근거한 (영미)고용차별법의 가치론적 이해.
- 장지연·김정우(2002).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양건(2000). 법사회학. 아르케.
- 윤정향(2007).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이가옥·이지영(2005).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과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통한 대안모색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고령층.
- 한상진(2005).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찰. 한국비영리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47-58.
- 허재준(2002). 고령화와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학회 발표문.
- 홍준형(2006).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28(1).

부록

※ 2009년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1~3주 과정(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훈련과정	직종명	연령별·성별 지원인원									
		전체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주 과정	가사보조원	0	547	0	300	0	169	0	62	0	16
	경비원	81	0	21	0	28	0	19	0	13	0
	식당종사원	0	9	0	5	0	3	0	1	0	0
	실내환경미화원	0	39	0	8	0	13	0	11	0	7
	실버킵	36	5	2	0	3	1	3	1	28	3
	임종환자 돌보는이	0	24	0	13	0	8	0	3	0	0
	방과후 독서도우미	0	4	0	3	0	1	0	0	0	0
	설문조사원	0	4	0	4	0	0	0	0	0	0
	소비자모니터	0	4	0	4	0	0	0	0	0	0
	급식도우미	0	8	0	4	0	4	0	0	0	0
2주 과정	간병인	10	585	3	310	4	199	1	64	2	12
	사무보조원	11	15	1	9	6	4	3	2	1	0
	산모와 신생아 돌보는이	0	944	0	587	0	276	0	78	0	3
	반찬관리사	2	51	2	30	0	15	0	6	0	0
	종합병원 환자도우미	0	12	0	4	0	4	0	4	0	0
	예절지도사	1	19	0	10	1	7	0	2	0	0
	노인도우미	0	5	0	4	0	1	0	0	0	0
	산후조리사	0	4	0	3	0	1	0	0	0	0
	호스피스도우미	7	71	2	39	1	21	1	9	3	2
	방과후 아동도우미	0	6	0	2	0	4	0	0	0	
	베이비시터	0	204	0	141	0	49	0	13	0	1
	보육교사도우미	1	3	0	2	1	1	0	0	0	0
의약사무 정보보조원	0	1	0	1	0	0	0	0	0	0	

기 획 주 제

<계속> 2009년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3~4주 과정(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3주 과정	조리보조원	2	34	0	19	0	8	2	5	0	2
	텔레마케터	0	34	0	21	0	11	0	2	0	0
	전래놀이지도사	1	8	1	2	0	3	0	2	0	1
	CA강사	0	9	0	7	0	1	0	1	0	0
	노인상담도우미	1	7	0	5	1	0	0	2	0	0
	동화구연지도사	0	28	0	18	0	4	0	5	0	1
	병원코디네이터	2	3	0	2	0	0	2	1	0	0
4주 과정	임산부지도사	2	6	1	3	0	2	0	1	1	0
	도매보조원	5	14	1	9	1	5	2	0	1	0
	미용보조원	0	14	0	7	0	2	0	3	0	2
	봉제보조원	0	36	0	19	0	8	0	7	0	2
	세탁보조원	0	4	0	3	0	1	0	0	0	0
	영유아생활지도	0	96	0	58	0	29	0	8	0	1
	의류수선원	1	17	0	12	1	4	0	1	0	0
	제과보조원	0	22	0	13	0	5	0	4	0	0
	제빵보조원	4	32	1	15	2	13	1	2	0	2
	김치제조사	2	16	1	11	0	1	1	3	0	1
	독서지도사	0	0	0	0	0	0	0	0	0	0
	전산사무보조원	0	9	0	4	0	4	0	1	0	0
	웨딩서비스	0	15	0	12	0	3	0	0	0	0
	홈패션	0	30	0	20	0	5	0	4	0	1
	개호복지사	2	14	1	6	1	7	0	1	0	0
	컴퓨터자료입력원	3	5	0	3	1	1	1	1	1	0
	네일아트	0	2	0	1	0	1	0	0	0	0
	인터넷쇼핑물관리사	3	6	1	3	0	2	1	1	1	0
	피부관리사	0	5	0	2	0	3	0	0	0	0
	노인컴퓨터지도사	2	24	1	10	0	6	0	7	1	1
	전문간병인	2	169	0	89	1	56	1	21	0	3
	급식조리원	0	13	0	10	0	1	0	1	0	1
	꽃집경영	1	9	0	7	0	1	1	1	0	0
NIE지도사	0	1	0	1	0	0	0	0	0	0	
PC정비	6	2	3	0	1	0	2	1	0	1	
한복제작원	0	18	0	12	0	5	0	0	0	1	
한식조리보조원	1	39	1	24	0	9	0	6	0	0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과제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과 선호 중심으로

| 이소정*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각 유형의 사회참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과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정책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함의를 찾고자하였다. 총 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사회참여 유형(자원봉사 활동 참여, 종교활동 참여, 직업활동 참여, 경로당 참여, 비 사회참여)별 노인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는 개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이질성은 생애경로에 걸쳐 누적된 경험 및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관련된 네트워크는 상호연결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더욱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노인들 중 다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설 인프라 개선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사회인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직업활동, 경로당 참여

I. 들어가며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노인집단의 약 1/3은(32.5%) 노후의 시간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정경희 외, 2005). 이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은퇴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박탈된다는 현실이, 그 보다 더 깊숙한 곳에는 생산의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즉, 생산력의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기력, 쓸모없음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배제로 연결된다. 실제 노인을 제외한 기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노쇠하다’, ‘독단적이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는 사실은 생산성이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연결됨을 실증하는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비단 사회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의 제 유형, 예컨대 자원봉사, 일자리, 종교, 여가 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positive)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노인 사회참여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사회참여율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 중심의 조직적인 사회참여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경로당 활동 등에 제한된 사회참여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사회단체 종류별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7.9%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사교단체에는 35.5%, 운동단체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 0.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단체 활동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각 유형의 사회참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과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정책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함의를 주고자 한다.

II.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 검토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함의를 갖고 있는 이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리이론

분리이론은 노인은 그 전단계의 활동수준을 저하하고 수동적인 역할을 찾고 자신의 내부의 삶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이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분리이론은 노인 집단 내 개인의 선호와 인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구조와 기회구조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지속이론

지속이론은 인간은 성인기를 통하여 형성한 특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분석단위를 개인에 초점을 뒀으로써, 노화과정을 수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외부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3. 활동 이론

활동 이론은 노인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함으로써 후기 삶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본다. 노인은 다양한 생산적인 역할을 하며, 자발적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유지되고, 적응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기를 중년기의 확장으로 보는 것으로 노년기를 분리된 삶의 기간으로 간주하는 분리이론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론의 논점은 Rowe & Khan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Rowe & Khan(1998)은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통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active engagement with life)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4. 역할이론

역할이론은 한 사회는 주어진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한다는 믿음체계인 연령규범(age norms)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규범에 의해 노인은 노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사회화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역할이론은 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이후 여생의 역할변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5.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활동 또는 분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아와 사회 모두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6.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철회와 고립은 체계적 욕구나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 내 노인과 다른 구성원들간의 ‘투자과 회수(investments and returns)’의 교환과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노화에 따라 기회 구조와 역할, 기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은 전형적으로 사회관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더 적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노인의 경제·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존경과 인정, 사랑, 현명함, 자원봉사 활동력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사회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우리사회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비물질적 자원을 최대한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7.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기에 적응하며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구조적 특성이므로, 사회계층이 노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본다.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약요인이 노화의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연령뿐만 아니라 계급, 성, 인종, 민족에 의해 유형화되며, 경제 또는 사회정책에 의해 제도화되고 강화되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기회와 선택 그리고 후기 삶의 경험을 제한하게 된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질적인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하는 것이며,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의 질적분석의 적절성을 위해 분석 대상자를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노인과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면접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으로 구분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의 결과, 이들 세 지역의 경우 노인관련 시설 및 인프라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의 충분함을 위해 면접은 크게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접은 양적분석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양적 분석 결과와 1차 면접 결과에 대한 대조분석 작업 후 양적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면접 내용을 예각화시켜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충분성을 위해 면접 인원은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총 16명(1명은

기 획 주 제

2회에 걸친 인터뷰)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도시지역 노인 5인, 도농복합지역 노인 5인, 농어촌지역 노인 6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6명 가운데 사회참여를 하는 노인이 9인, 별다른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노인이 7인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 수집 형태의 하나로서 정보를 유도해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형식화한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부터 구조화된 면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면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적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비지시적,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시작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면접법의 취지를 살리고 참여자의 면접 과정에 능동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했다. 면접시간은 노인의 체력적 조건을 감안해 1인당 최대 1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면접일자	인적사항	비고
1	2006.10.10	20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2남 4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따로 살고 있다. 과거 제물포와 갑화점을 했으며, 70세에 장사를 접었다. 지금은 몸이 아픈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도시
2	2006.10.12	38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딸과 아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라이온스클럽에서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자체적인 친목회를 결성해서 친목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도시
3	2006.12.06	38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IMF 이전 도매시장에서 의류판매를 했으나 사업이 망한 후에는 아내가 음식점에서 일해서 가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도시
4	2006.12.08	40년생 여성으로, 자녀는 3남 1녀이며, 현재는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작고)을 대신해 40년 동안 종로에서 노점상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노점 외에 주변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진 않고 있다.	대도시
5	2006.12.10	35년생 남성으로, 자녀는 없으며,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과거 화가로 일했으나, 1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산에서 휴지를 줍거나 공원에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대도시
6	2006.10.17	41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다. 자녀는 3녀 1남이며, 따로 살고 있다. 과거 공무원, 택시기사, 교회부설 양로원 원장으로 일했다. 퇴직 후 심장병을 앓다가 완쾌된 후 노인복지회관에서 소개한 자원봉사활동(노인 학대지킴이, 교통정리, 아동신문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중소도시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계속)

사례	면접일자	인적사항	비고
7	2006.10.18	40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중졸이다. 자녀는 1남 2녀를 두었고, 퇴직군인인 남편과 함께 따로 살고 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당뇨병을 앓고 있다. 현재 권사로 있는 교회의 부설 실버대학과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소도시
8	2006.10.17	31년생 여성으로, 과거 경찰로 일했다. 3남 2녀를 두었고, 현재 큰 아들, 손자 내외, 증손자 13명이 함께 살고 있다. 퇴직 후 잠시 농사를 짓다가 다시 도시로 나와 생활하고 있다. 동네 부녀회에서 장구 교사로 봉사하는 일 외에는 친구들과 노인시설과 시내를 순회하면서 지낸다.	중소도시
9	2006.10.14	33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무학이다. 자녀는 5남매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살고 있다. 결혼 후 무직인 남편과 살면서 복덕방, 재래시장 장사, 결혼 중매, 계모임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지금은 혼자 살면서, 주로 고물수집과 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경로당에서 소일하며 보내고 있다.	중소도시
10	2006.11.25	35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다. 자녀는 3남 1녀를 두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맞벌이하는 아들부부의 아기를 돌보며 함께 살았으나 현재는 따로 산다. 결혼 후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살았고, 사회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2006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중소도시
11	2006.10.25	43년생 남성으로, 현재 거주지역에서 농업과 다방을 겸업하며 경제생활을 꾸리고 있다. 과거에 산악회, 라이온스클럽, 임업협동조합 등에서 간부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농어촌 지역
12	2006.10.25	32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3남 2녀를 두었으며 따로 살고 있다. 과거 농촌지도자연합회 공무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군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자원봉사를 했으며, 지방자치제 선거에 출마를 하는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는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13	2006.10.28	27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중졸이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시설미비지역인 농촌에서 전체 생애를 살았고, 퇴직 후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
14	2006.10.27	35년생 남성으로,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과거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의사인 두 아들의 용돈과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퇴직 후 가풍에 따라 유교 장이로 2년간 활동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인시설미비지역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들과의 친교 외에 별다른 활동 없이 보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
15	2006.10.25	36년생 남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1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과거 세관 공무원과 관유리회사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1986년 부모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산(家産)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성당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16	2006.10.25	42년생 여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다. 자녀는 1녀를 두고 있으며 따로 산다. 일간지 기자로 있다가,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10년 전 불치병을 앓아 오른손과 오른발이 불편하다. 주로 성당에서 봉사활동과 신앙모임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IV. 사회참여 유형별 노인들의 인식 분석

1.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한 가지 분야에서의 사회참여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사회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자신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노년기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참여의 다른 형태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개발에 치중되거나(ex. 직업, 교육, 운동, 문화, 종교) 친목위주의 사회적 관계형성(ex. 사교, 경로당)이 주를 이루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적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에 의해서도 왜 이 유형에 속하는 노인들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노인 자원봉사의 상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노인은 주로 다양한 네트워크의 ‘끌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유도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혹은 네트워크의 귀결점이 된다.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또 역송회라고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역송회, 바르기살기협의회, 라이온스 클럽.. 지금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산림조합의 이사로도 나가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해가지고는 모임 단체가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산악회장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맏기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도 가입이 되고, 또 좁은 사회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입이 돼서 서로 융화적으로 살아야지.. 그 자기 하나만 하고 안해 버린다면 말이 안 되요...다 얹혀 있습니다...(면접자 11).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서 맹인박물관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박물관에 온 시각장애인



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박물관 인도를 해주는 것이예요. 가만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 장로와 함께 맹인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처럼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목욕을 돕는 목욕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쪽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원봉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차츰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연결시켜주는 곳을 찾아가지고 독거노인들 목욕도 시켰지. 그 답에 인자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폭력지킴이도 나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쫓짜가 아니라 식비하고 차비하고 주터라고.. 약간.. 그래서 인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봉사도 시작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지킴이 봉사는 여기 복지회관에 왔을 때, ○○ 복지회관에서...친구들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칠천명 팔천명 그 중에서 2-30명 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것이죠. 한 단체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또 해볼라나? 그러면 생각해봤다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해보면 알어. 한 가지 하면 두 가지 하고 싶고, 두 가지 하면 세 가지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하고 싶고...(면접자 6).

즉, 처음에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아무런 상과 계획이 없었더라도 교회, 친구 등의 친목모임, 직장 등 노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한 번의 경험은 또다른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로 연결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사회참여 유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그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상에 있어서는 저마다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상은 크게 소극적 자원봉사와 적극적 자원봉사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소극적 자원봉사의 경우,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에서부터 공원의 휴지를 줍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란 다름 아닌 일상생활의 소소한 기여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다수의 노인들은 소극적 자원봉사의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달리 막상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 그 근처에 있는 네트워크 특성은 공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보다 비공식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예컨대 친목모임 등)에 근거하는 특징을 보인다.

봉사라는 건 아무데 가서 담배꽂초를 하나 줍는다니, 어려운 사람 부축해주는거 이런거 다 봉사 아닙니까? 가차운데서 찾는거 내가 아는데... 우리 친목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나오면 공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허다 못해... 담배꽂초를 줍는 것도 환경에 관한 좋은 일 아니예요? (면접자 2).

반면 적극적 자원봉사의 경우, 경륜을 가진 노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의 부조리 해소 및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인식하며 이같은 시각을 가진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이 노후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데에는 이전 종교나 퇴직 이전 종사 직종에서 기인하는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학대 지킴이, 은빛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면접자는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을 퇴직전 종사 직종, 즉 공무원 생활과 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에서부터 찾고 있다.

도청에 근무를 15년간 했고, 그 뒤에 살기가 좀 저기해가지고.. 구차해가지고 또 개인택시를 좀 했었어요. 개인택시를 하던 중에 ○○양로원 취업이 되가지고 거기 원장까지.. 양로원에 있을 때, 자원해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라든지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가치 있는 생활을 한다.. 이런 감을 느꼈고.. 나도 이 직장을 나가면은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거기에서 가지게 되었어(면접자 6).

공무원 30년간 공직생활 하다가, 여기서 탄 군도 안가고, 그때 국가직이기 때문에 발령이 탄 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성격상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윗분들이 딱 잡고 안 놔준 것이죠. 동군에서 퇴직을 해서, 이 고장의 299개의 리·동이 있는데, 내 발길 손길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공직을 하면서도 봉사단체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라이온스도 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 저게 중앙에까지 내가 감사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그 뭐.. 단체 책임은 안했지만, 여기저기.. 결국은 여가선용이지, 내가 직장의 일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본성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퇴직 후에도 계속 그런 봉사단체에.. 지금... (면접자 12).

즉,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토대가 부재한 현실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의 경우 이전 종사 직종에서의 경험과 같이 일반 노인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부분적인 이유도 설명된다. 즉, 현재 노인 여성은 젊은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회진출보다 가사노동에 주력했으며 이같은 경험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적극적 사회참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다수가 자금(돈)을 꼽았다. 여기서 자금이란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소소한 비용(교통비, 식사비) 뿐만 아니라 기부 형식의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를 비롯한 적극적 사회참여가 상당부분 사회적 지위 확보의 욕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활동은 교회에서 내가 많이 한 사람이예요. 교회에서 어떤 걸 많이 했냐면...내가 교회에서 남전도회 회장을 한 사람인데, ○○교도소라고 알리지 모르겠어. ○○교도소 거기 방문을 가야하는데.. 그때는 회장이 돈을 먼저 많이 내놔야 돼요. 일을 할려면...남전도회 회원들의 회비가 있는데 회비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로는 안되니까. 거기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생일잔치하고 그러는데 음료수도 사가야 하고 타올도 하나 줘야 하고 뿔도 줘야하고 뿔도 줘야하고 그래서...거기 가게 되면은 내가 먼저 20만원이고 얼마 내놓고 해야 딱 임원들도 따라서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차량왕래는 교회차로 가니까 큰 돈 드는 것 아니고, 휘발유도 교회에서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몇 번씩 갔다 올 수 있지. 그렇게 갈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갔다 오면 전부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아주 은혜 받고 내가 큰 무슨 일이나 하고 온 것 마냥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 볼 때 자꾸만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 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건 봉사성이고 하니까 부담이 안됐어요. 또 솔직히 말해서 으스대는 기분도 생겼고, 딱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먼저.. 나는 또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수표 10만원짜리는 오른쪽에 따로 넣고 왼쪽에는 만원짜리를 넣고 이렇게 따로 넣고 다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기분 날 때 10만원짜리 수표 딱 내놓으면 만원짜리 10개랑 기분이 달라요(면접자 3).

저는 그 산악회장도 했고, 라이온스회장도 했고 그런데.. 회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좀 쓸 줄 알아야합니다. 자기 돈을 너무 아끼면 회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은 남을 위해서, 우리 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걸림돌은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가 자금이 없으면 회장 역할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놓고 자기가 쓰면서 벌면서 해야 된다. 또 나이가 들

었다 해서 사회 팽개치지 말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매치고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해야 해요. 또 그러고 회장이라 해서 회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하고 실행해야 하고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노인이 자격이 없어(면접자 11).

2. 종교활동 참여

노년기의 종교활동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왜 종교가 이처럼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먼저, 건강행위가설(health and behaviors hypothesis)은 종교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컨대 음주, 흡연, 약물, 도박 등)과의 접촉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으로 삶의 질이 증가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인지적일치가설(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은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정신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통합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은 사회적 그물망이 대폭 축소되는 시기인 노년기의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종교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 즉, 종교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연결망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김수정, 200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의 결과, 종교가 노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교에 접근하게 된 경로도 다르고 현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종교를 통해 노후에 단절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가설과 일치하는 현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원래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종교를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예를 들어 직장, 사교 등)가 노인이 되어감에 따라 점점 단절되며 종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활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특히 목적의식적인 네트워크 추구의 행위로서 종교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버대학에 가요...할머니들이 그냥 각지에서 오는데 한 200명가량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웃고.. 할머니들이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 하고,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그걸 꼭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기어서 2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꼭 기어서 올라와서 여기를 참석하냐고.’물었더니 화요일날만 그 할머니가 꼭 기다린대요. 왜냐면 여기 오면 이야기도 하고 벗도 생겨서 재밌게 놀고, 점심도 맛있는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가면 독수공방 홀로 있대요. 외롭게.. 할머니들 물어보면, 그 외로운거.. 외로운 것이 켈로 서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다 돈 벌고 나가고 이러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가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픈데도 조금 가시고 덜 아프고 또 집에 와서 누으면 또 아프고 또 나가서 할머니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면 너무 재밌어요. 한번은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교회만 오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XX교회를 가고, 화요일 날은 XX교회를 오고, 수요일 날은 ○○병원 밑에 무슨 교회냐.. 그 교회를 가신대요.. 일주일이 돌아오면 딱 짜져있어. 그 할머니들은.. (면접자 7).

이렇듯 노인이 된 후 네트워크 추구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에 접근하게 된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참여 활동에 비해 네트워크 및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여자 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교중심의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또다른 집단은 이전 종사직종이 전문직 이상의 고위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는 종교활동 참여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상반된 면모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현존하는 노후 사회참여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의 요소가 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의 요소란 핵심적으로 노인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낙인을 의미하는데(경로당은 ‘수준이 낮다’), 이처럼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에 비해 종교는 초계층적이며 무엇보다 세대통합적인 특징을 가져서, 소위 ‘수준 높은’ 노인들이 보다 젊은 계층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동아리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임무를 해요. 성당자체에서 짜요. 성당에 무슨 행사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팀별로 짜서 로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성당봉사활동을 참 잘해요.... 성당에 가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좋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라고 애를 써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것도 얻어듣고 말 한마디라도 듣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면접자 16).

3. 직업활동 참여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들 중 다수는 현재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우, 양적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어야 하며, 직업활동이 주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과, 재미, 소일거리 등을 직업활동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동시에, 직업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은 ‘떳떳하고 싶은’ 욕구,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으며, 몸이 닿는 한에서 일(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라고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냥 재밌어. 내가 이거 나가서 또 별어서 쓰고 그냥 하루하루 나가면 여러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나와. 일 년에 하루도 안 놀아. 그래서 설날도 나오고 그래. 맘은 좀 괴롭고 그런데.. 괴로울 것도 없어. 아들 셋 딸 하나니까 떳떳해...(중략)...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돈도 돈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나아. 건강을 위해서. 일 안하고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은 나는 정신상태가 나쁘다는 거야. 놀고 남한테 의지하고 이 세상에 공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내가 베풀어야지.. 안 돼. 그런 맘을 먹으면... 나쁜 사람들이야. 남에게 의지하고 남한테 쉽게 벌리고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내가 노력해



서 남 도와주고 노력해서 벌어야지 아무한테도 의지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 그냥 나쁘다는 걸로 놓고 그냥 남한테 피해주고 나쁜거야. 사람은 떳떳한 생활을 해야 돼. 떳떳한 생활을 해야지 요만큼도 나쁜 짓 하면 안 돼. 떳떳하게 돈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면접자 4).

난 돈이 안 벌리는건 안혀. 10원이라도 벌어야되. 절대 갖고 들어오는거.. 병 하나라도 좋은 장이라도 갖고 들어온 것 하고 잡어. 왜냐면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 나는 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내가 벌어야 한게. 어디도 고장나면 돈 들어 고쳐야하고, 부서지면 사야하고 그런게.. 그냥 무료봉사는 못혀.. 나는 옳게 말하고 잡어.. 양심껏..(면접자 9)

반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직업활동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주로, 고위전문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직업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상류 직업계층에 속했을수록 노후에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 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심층면접을 분석해 보면 그보다 심층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젊은 시기에 일을 ‘할만큼’ 했으므로 더 이상 직업활동과 그것이 주는 성취 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며 젊은 세대의 몫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인제 또 욕심을 부리고 남한테 지탄을 받을까 싶어서 절대 그런 욕심은 안냅니다. 왜냐.. 저 사람은 너무나 이때까지 공직 생활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야지.. 뭐가 욕심이 많아 갖고 다른데 가서 또 뭐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 하나.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그렇게 거기다가 집착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이 퇴직을 했으면 그걸로 해서 끝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활동을 안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남한테 지질부진하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만큼 했으니 만족하게 살고 연금 나오면 연금 그놈 받아 갖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욕심을 내면 안돼요(면접자 14).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또다른 유형은 스스로 직업활동을 원하지만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장벽들(예컨대, 사기, 실망), 또 직업활동시 경험한 주변 사람들(특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직업활동을 포기하고 냉소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스스로 직업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전 이야긴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다고 볼 수 있구,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가지고 한번 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서 갔던 건데...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나이가 되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을 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일절...노인네들이 이런데(공원 벤치)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쪽지 같은걸 한 장씩 주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지금 이야기 한거나 마찬가지로 무슨 희망사항이 있거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로 찾아와라. 연락처가 다 있고 해서 한번 거기다 연락해보면 단단계 판매나 아니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쓸데없는 물품.. 이런거 가지고 나가서 거리 가서 팔아서 이윤 좀 먹는 거... 나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이상스러운 그런 저 회사 비슷한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일절 그런데도 안가고, 뭐 갈 필요도 없구...(면접자 1).

정수기 회사에서는 65세까지 쓴다는 거지. 정수기 파는 데 연령제한이 있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5세 넘은 사람들도 1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서를 써내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회사 내에서는 신청서를 써 내도 사실은 받지 않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뒀다는 그 뜻이고.. 그 사람들도 그냥 인간적인 요소로 봐서는 얼굴 맞대놓고 딱 새해부턴 '관두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고 어려워서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신청서를 나눠줄 때 신청서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그런 표현들이지. 그러니까 것도 사회적인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 또 총책임자로 있다면은 나도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아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에게는 일 시키기가 편해요.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저기 가서 뭘 좀 해주세요.' 하고 시키기가 시키는 사람 자체도 아주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쓰게 되고 그러는 거지.(면접자 3).

한편, 심층면접 과정에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제도의 한계도 포착되었는데, 일부 구직의사가 있었던 심층면접자의 경우, 구직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제도의 일회성으로 인해 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했다.

동사무소 자활 일도 했어. 이렇게 돌아댁기면서 화장지 줘는거.. 3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10월 달에 그것이 모가지가 나갔지. 딴 사람이 해야한게..돌아가면서 없는 사람이 해야 한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면접자 9).

(정부에 바라는 일은) 노인 일자리를 좀 체계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분배해서, 어떤 사람이든

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정부에선 하나 밖에 안준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하나 밖에 안줘요. 일자리 하나.. 두 개는 겹쳐서 못해. 그것도 컴퓨터에 딱 떠버리니까... 급료로 나가지. 그래서 20만 원짜리 활동하고 있구나, 일자리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못해. 그 일자리도 20만원만 줄 것이 아니고 좀 높여서.. 그래도 좀 일하고 보람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정부에서 뒷받침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면접자 6).

4. 경로당 참여

심층면접 결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일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돈을 안들이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종교활동은 안해.. 왜 안하나면.. 절에도 갈려면 돈을 많이 갖고 가야하고, 교회도 갈려면 돈을 많이 갖고 가야하는데... 경로당에서도 와서 다 갈켜. 선생님이 와서 갈켜. 요가도 갈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다 갈켜. 저쪽 경로당에 가서 있을 때 배워가지고 와서 대회도 나갔다 왔어. 돈 안들여. 그냥 무료로 와서 다해줘.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먹을 것이 많이 들오는가... 생일이라고 들오고, 동사무소도 들오고, 시에서 다 저런데서 양로당들.. 허다 못해 라면 한 박스라도 다 갖다줘. 할머니들 먹고 살으라고.. (면접자 9).

한편 농촌지역과 같은 시설기반 미비지역의 경우 경로당, 혹은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을 제외한 다른 노인관련 시설의 부재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심층면접자들은 다른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경로당, 양로당, 마을회관 등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주 혼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에게 경로당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대명사였다.

여기 마을에도 노인회관이 있고 읍에 나가도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 가서 인제 친분붙이기를 해서 친구들 많은데 거기 가서 놀고 그렇게 합니다. (면접자 14)

기 획 주 제

지금도 노인당이 노인회관이에요. 노인회관이네 어쩐데... 그 우리 마을 회관인데, 그 간판을 제가 인자 창건할 때 법원 가서 그것을 전부다 협조하고 그래가지고 인가가 나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 마을에서 편리한이...회관이라 함은 편리한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낙입니다, 저는. 그렇게 겨울이 되면, 불때고 그러면, 거기 모입니다. 그러면 거서 인제 얘기하고 또 관리하고...(면접자 13)

반면, 경로당을 회피하는 경우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경로당 활동의 질적 저하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는 주로 화투를 치거나, 담배연기가 자욱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너무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 등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등 ‘수준’이 안 맞아서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노인정은 안가게 되더라구. 글썄 뭐 수준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가봤더니 앉아서 뭐 담배나 피우고 첫째 공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화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 성향에 맞지 않고 그런거지. 노인정은 바로 아파트내에 다 있어요. 있지만 오라고는 해도 안가요, 가지 안해. 노인정은 내 아까도 가봤는데 공기도 탁하고 노는 방법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내 성격..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면접자 2).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로당에 대한 일종의 ‘낙인(stigma)’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즉 경로당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고, 따라서 아무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더라도 경로당에 갈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은 경로당의 내용적 부실함과 상호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특히 경로당이 작은 지역사회 안에 위치함으로 인해 경로당의 주 이용자들의 신상이 공유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노인: (경로당은) 나는 사실 별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좀 수준도 안 맞고... 그런데 가서 마실 가서 놓고 어찌고 그런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고.. 또 첫째는 솔직히 말하자면 수준이 안 맞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좌우간 상대가 좀 안되는 거지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지는 않았어도, 동네 다니는 노인 분들 열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떨지 아는 거지. 물론 앉아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가깝게는 그렇게 해도.. 같았어도가서 함께 놀고 그런 것은 안하지요. 우리는 그래도 좀 학교도 좀 다니고 그랬



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많아 많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하고 상대적인 것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안되지. 대화도 잘 안될뿐더러... 가서 같이 놓고 뭐 어찌고 허면은 그것은 좀 수준이 안 맞으니까 대화가 잘 안되죠. 이렇게 동네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뭐 어찌고 그것은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니지...

연구자: 그러면 경로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노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라... (면접자 10).

이런 측면에서, 경로당은 노인의 교육수준 및 이전 종사직종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사무직(화이트칼라) 이상일수록 사회참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경로당보다는 다른 유형의 활동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5. 비 사회참여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노인들은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으나 그 이면에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라는 공통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그 의미와 파급효과가 매우 상이한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갈래로 정리되며, 이는 [그림 1]에 종합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낮은 수준의 사회적 제도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수준, 즉 이미지의 저하를 초래한다. 현존하는 노인 사회참여를 위해 ‘특화’된¹⁾ 제도(인프라)란 핵심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로당은 내용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의 ‘복지 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 및 낙인과 이미지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지 선입견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현재 이들의 운영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1) 여기서 특화되었다 함은 제도(인프라)의 근본적인 준립 이유 자체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며 기타의 이유(예를 들어 종교적 이념의 보급 등)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기 획 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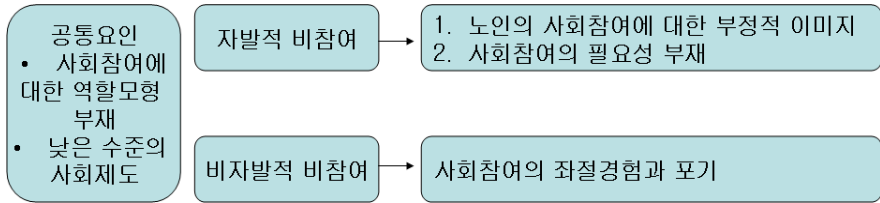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의 소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도식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족치가 많기 때문에 가기가 그래요... 복지회관 같은데 저 ○○ 복지회관도 몇 번 가봤는데, 식사하는데 줄을 서야 한단 말이야. 난 줄 서는 게 그렇게 처량하고..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물론 밥을 먹으려면 그게 원칙인데 아무튼 처량하고 불쌍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오 천원이 있으면 한 그릇 사먹고 마는 건데..왜 여기서 이렇게 줄 서고 있냐.. 속마음으로..그런 생각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거야. 거기서 다 가르쳐주고 뭐 인터넷도 있고 이발소도 무료로 하고 그 뭐야 사교춤도 가르키고 없는 게 없어. 거기도 다 있어요. 거기도 인간사는 데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자도 여자도 다 있는데.. 그래도 난 그냥 줄서고 밥 얻어먹고 그런 게 싫어요. 내가 내 자신이 처량해. 자존심 관계도 있고... 복지관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왜? 얻어먹는 주제에 뭐 이리쿵저리쿵을 하나 그런거야(면접자 3).

그것도 다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체면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 것이지... 그거 하고 있으니... 교통정리 한다고 뭐 들고 이렇게... 아이구 나 그런 것은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기 가서 저 교통정리도 하고 요거 들고 그러더라...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인제 나이가 70이 넘어 가지고 뭐할라고... 그것도 돈을 안주고 무료 봉사를 한다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럼 돈(교통비)을 오면서 준다고 하더만... 그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있다... (면접자 14).

이렇듯, 현존하는 인프라의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며 특히 고위전문직 종사자로 대표되는 상류층 노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부재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극적인 사회참여는 궁극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롤모델(role—model)의 부재, 즉 상의 부재로 연결된다. 우선,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의 대다수는 젊은 시절 생활의 고



단함으로 인해 노후 활동의 상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노인들은 사회참여를 근로활동과 연결시키거나 노인대학 등에서의 배움(교육) 활동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활동은 모두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즉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수동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노후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했지. 노후생각은 커녕 우선 자식들 잘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러느냐 그걸 감당하느냐가 큰 문제지... 나중에 일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 내가 나이가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여유가 없었어. 그렇게 살다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면접자 10).

무슨 자원봉사 한다 하든가.. 뭐 그렇디다. 그래서 내가 웃어버려요. 인제 돈 벌었으면 한잔하자... 당초에는 저도 퇴직한 한 3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그러나 인제 3년이 지나니까 아하,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뭐할 것인가?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대로 내 인생을 마감 해야지... 이런 생각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구직을...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면접자 14).

그리고 뭐 노인대학이라 함은 뭐 좋은데.. 사람이 모르는 걸 배우는 건 좋거든? 근데 노인대학은.. 나도 내 나이 많은... 학교는...저...배울만큼 배웠으니까 더 이상 뭐 배운다는 것은.. 지금 정신적으로 또 뭐 하드라... 쉬는 것이 지금은 쎄 좋아요. 젊었을 때는 나도 사업을 하면서 봉사에 관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민족경협협의회 회장도 내가 10년 이상 했구, 환경에 대한 것도 했고 뭐 그 민간단체장도 이렇게... 일반단체장이지... 손을 놓은 건 또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물려주고, 나는 고문으로 좀 있었는데 그거까지 인제는 내가 뭐 안 하는게 좋다 해서 내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면접자 2).

이처럼 사회참여에 대한 상이 부재한 가운데 상류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경우, 즉 금전력과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경륜을 갖춘 경우, 노후에도 여전히 가족내에서 중요한 역할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노후에 발생하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사회참여의 상 혹은 노후생활의 상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집 일이라는건 뭐냐면 일단 내가 호주니까 애들들(결혼한)하고 같이 있으니까... 집안생활이나 그런 것은 내가 참견할 건 참견해야 하구. 그러니까 할 일이 있죠. 내가 집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거든요. 집안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은 나왔다 갈수는 있어도(사회활동을 위해)...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아들이 또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좀 신경을 써주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내가 지금 뭐... 뒷바라지라고도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해야 하니까...금전적으로나 하는 사업에 아직 내가 그래도 아직은 멍텅구리는 아니니까... 좀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거죠 (면접자 2).

즉, 상류층 노인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의 화살표가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층 노인인데, 이들은 양적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고위직 종사자 및 생산직 종사자의 양극단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의 지위 및 역할 상실을 경험하며, 동시에 생산직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하층에 비해 외부에서 다양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자원(배움, 자금, 자신감 등)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사회참여의 의지는 있으나 자원의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원봉사? 아무나 못해. 어디서 가자고 해야 가. 가자고 저 가서 일전이라도 벌고 적은 거라도 벌고 한 달에 십 만원이라도 벌게, 자원봉사도 되지만은... 갑시다 해야 가지 혼자는 못가.. 누가 가자 해야 가지.. 어디 가는지 알가니? 그런 거를 아직 모릉께(면접자 9).

내가 ○○복지관을.. 여기 조그만한게 있다 하길래 내가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가서 ‘이 ○○복지관이 뭐하는 거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받는 복지관이래요. 그럼 당신 복지관이 아니요... ○○에 있는 사람만 복지관이요, 그럼 공원에 나온 사람들은 말이야 그 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냐?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복지관이 아니죠. ○○에 있는 사람만... 그러도 또 증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종로 사람은 신분증을 딱 보여줘야

들어가고 밥도 먹고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냥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복지관이 그럴 수 있어요...(면접자 5).

이처럼 금전 및 정보와 같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혹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힘으로써 발생한 좌절은 생애에 걸쳐 쌓여온 누적된 피로와 결합되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의사 자체를 포기하는 완전한 ‘자포자기’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뭐 자포자기한 사람이라... 기냥 다 밀쳐버리고 그저 거..국가에 뭐 봉사한다 그런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도 싫고, 나 혼자 스스로 편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나이 관계도 있구, 내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우러러 볼만한 이러한 인물도 못되고 그것도 좀 내가 배워가지고 유식하다든지 아는 게 많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살아온 길이... 고생을 하며 살아오면서 그저 그냥 자식들 놓고 살고는 겨우 돈 조금 생기니까, 자식들 나가고 고생만 진창 하다가 늙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래서 인제 술을 배우게 되거고, 술을 먹게 되는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쥔 편해요. 더..이상 바라봤댔자... 나이관계가 있어봐서... 실천에 옮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받아들이자니 내가 대응할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면접자 3).

V. 결과 및 함의

1. 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개별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이질성은 생애경로에 걸쳐 누적된 경험 및 자원,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가령 청장년기의 직업계층, 교육수준, 성별, 거주 지역 등의 요인에 따라 노

인의 사회참여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생애경로에 따라 누적된 네트워크 및 자원의 차이, 인구학적 조건의 차이, 사회제도의 현황 등이 맞물리며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향후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관련된 네트워크는 상호연결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더욱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심층면접 분석이 보여주듯이, 사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교모임에서 비롯된 사회참여는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사회참여로 연결되며 이는 보다 사회적인 형태의 참여, 예컨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와 단절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참여의 형태는 더욱 풍부해지며(사교모임, 여가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노인권익단체 활동 등) 또한 더욱 ‘사회’ ‘참여’적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노인 개인의 자율적인 취향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참여의 여러 형태 간에는 위계적 속성이 존재할 가능성을(사적→공적) 시사하는 동시에 사회참여 ‘경험’의 중요성을 함축하기도 한다.

셋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 중 다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사회참여에 대한 역할모형(role model), 또는 상이 부재함에서 기인하며, 둘째, 현존하는 사회참여와 관련된 인프라가 기존의 ‘복지’ 인프라와 접목됨으로써 노인 사회참여의 주 대상이 잔여적 복지의 수혜자와 교차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를 종합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현존 사회참여 인프라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 시설인프라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 중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욕구가 발생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 사회참여 시설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참여를 하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시설이 노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으므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잠재한 욕구가 자극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 인프라는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족하다.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방안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그 외의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참여 공공시설 인프라의 확충방안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 사회참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41.5%인 9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의 설치는 각종 노인복지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2007년 현재 미설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이 없으나 사회복지관 등의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인구학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시설을 내용적으로 다원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 참여의 기회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노인 사회참여에 관한 공공 인프라의 질적 낙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노인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자원을 결여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결여하고 있는 다측면적 자원을 보충하고 이들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

기 획 주 제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공공인프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다. 앞서 설명했듯,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기존의 ‘복지’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 복지의 수혜’라는 인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사회참여에 관한 욕구도 다양화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기존의 공공 인프라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다양한 민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민간단체에 의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여가문화 바우처제도 도입, 노인 사회참여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통한 민간 시설 인프라의 확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특화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상담부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예, ‘노인 사회활동 정보센터’).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정보와 상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제도적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언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인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에 기반해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존 사회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시설 인프라 이외



에도 교통 시스템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노후 재교육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생애를 거쳐 누적된 심리적 피로를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노후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노후가 국민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주체가 나서서 실시하는 협소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 기업(시장), 민간(제3섹터) 등이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과 몫을 수행해야 하는 거시 사회적 프로젝트로 수립되어야 한다.

3) 사회인식 개선 방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동양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가지는 속성,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암묵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노인층이 수동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면 그 자체로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면 먼저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 개선을 수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령통합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 승·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 김경혜(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동배·이윤화·안인경(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5-77.
- 김주현·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3): 621-647.
- 박정은·원영애·최은영(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주문(1999) “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 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 회보》 11(2): 245-261.
- 양순미·홍성례·홍숙자(2004) “농촌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4(2): 145-178.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윤종주(1994) “노인의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14(1): 168-178.
- 이경희(2004)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노년교육학연구》 10(2): 49-77.
- 이금룡(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5(2).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35-50.
- 이현기(2001) “고령자 재취업과 지역복지정책적 함의” 《노인복지연구》 11(1): 87-118.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경희(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pp.29-40.
- 조추용(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34.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Binstock, R. H. & George, L. K. (eds.)(2006)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sixth edition) Academic Press.
- Estes, L. Carroll, Simon Biggs & Chris Phillipson(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Open University Press.
- Gierveld, J., & Hagestad, G.(2006) "Perspectives on the Integration of Older Men and Women" Research on Aging 28(6): 627-637.
- Kim, Jibum, Jeong-han Kang, Min-Ah Lee & Yongmo Lee(2007)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1):



69-73.

Neugarten, Bernice L.(1968)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중고령자 근로관에 관한 국제비교

| 최숙희* · 강우린**

고령사회에서 중고령자는 연령 상승에 따른 임금부담 증가와 기술의 진부화로 인해 청장년층에 비해 노동시장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중고령자들의 근로관(Work Orientations) 분석을 통해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근로관은 개인 차원의 의식구조이지만 고용관계 현상의 근저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실시된 '국제사회조사연합(ISSP)'의 근로관 설문을 통해 국가 간 근로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 요인을 중심으로 31개 조사대상국 유형의 대표로 韓(스페인), 美, 日,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중고령자 유형은 나머지 4개국과 비교했을 때 ① 수입이 생기는 일이 여전히 중요, ②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함, ③ 고용안정성이 중요, ④ 자영업,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더 선호, ⑤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최하위, ⑥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안정성 최하위 ⑦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경험과 기술을 미래의 일에 활용하는 정도도 최하위, ⑧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최하위, ⑨ 직장에 대한 충성심은 다소 있는 편, ⑩ 본인은 직장을 구하기가 다소 어렵고, 대체인력 구하기는 보통이라고 생각해 이직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기업은 직원들이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개인의 흥미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직무배치를 하고, 경력관리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시간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배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중고령자의 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주제어 : 근로관, 일의 보람, 관계의 만족, 직무배치, 평생학습

I. 문제제기 및 자료분석

1. 문제제기

고령사회에서 중고령자는 연령 상승에 따른 임금부담 증가와 기술의 진부화로 인해 청장년층에 비해 노동시장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주저자), **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및 창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에 앞서 중고령자들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근로관(work orientations)을 분석하기에 앞서, 근로관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근로관은 개인 차원의 의식구조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용관계 현상의 근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고용의 양 당사자라고 할 때, 근로관은 그 중 노동력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 관련 사고방식인 것이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양자의 니즈가 일치됨으로써 생겨나지만, 근로관은 이미 그 이전인 공급자 니즈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작용한다. 개인이 원하는 직종이나 직장, 근무형태, 직무수행 시 쏟는 열의의 정도, 그리고 이직 결정 등이 근로관의 영향하에 있는 요소들이다. 노동력 수요공급의 미스 매치가 주요 문제로 떠오른 한국의 고용현실에서, 그 원인이 되는 근로관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근로관의 정의(Edgar and Borgatta, Marie L, 1992)부터 살펴보자. 근로관은 ‘일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하며, 크게 ① 일을 왜 하는가(동기 부여)와 ② 일에 대한 반응(만족도, 몰입, 스트레스 등)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관은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들, 즉, 개인이 어떻게 특정 직무나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 왜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워지는지, 무엇이 이직을 초래하며 그 이후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과 인과관계를 가진다. 또한 성별, 근속기간, 연령 등 근로관 상관요인(correlates of work orientations)을 함께 고려하면 사회 전반적 지향성이나 분절 정도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근로관¹⁾에 대한 국가간 및 연령계층간 특성 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근로관(Work Orientations) 설문문의 내용으로는 시간활용, 일의 목적, 일에서 중요한 것들, 선호하는 고용형태, 일로 인한 스트레스,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전직의 용이함 정도, 일의 유지와 전직 시 수용될 수 있는 조건 등 포함되어 있다.

2. 자료분석

2005년 실시된 ‘국제사회조사연합(ISSP :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근로관 설문을 통해 국가 간 근로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ISSP는 현재 전 세계 4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인 사회조사 연합이며, 한국은 2003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ISSP에서는 2005년 근로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SSP 자료는 총 31개국, 43,440개의 샘플이며, 연령대는 20대(20.8%), 30대(18.8%), 40대(19.4%), 50~64세(24.1%), 그리고 65세 이상(16.9%)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31개국 중 주요 5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근로관에 관해 비교 분석하여, 중고령자 근로관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적 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고령자와 다른 연령계층 간의 근로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연령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ISSP 자료는 2007년 9월 12일에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ISSP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과제이다.

조사대상 31개국 20~39세와 50~64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관의 유형화를 위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²⁾을 해서 2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2개의 요인으로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 요인³⁾이 추출되었다. 응답자의 근로 가치관과 관계 만족도를 기준으로 군집분석⁴⁾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의 대표로 韓, 美, 日, 프랑스를 선정하여, 근로관 관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 2) 주성분 분석은 원래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주성분을 찾아, 이를 통해 자료의 요약과 용이한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주성분 분석은 분석자체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차후의 분석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되는 판정기준들과 이에 연관된 주성분의 최적성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 3) ‘일의 보람’ 요인으로는 현재하는 일 관련하여 ① 일과 관련된 기술 향상, ② 일의 흥미, ③ 타인에게 도움, ④ 사회에 유익, ⑤ 독자성, ⑥ 현재의 경험/기술이 새로운 일에 도움, ⑦ 발전 가능성이 추출되었고, ‘관계의 만족’ 요인으로는 ① 상사와의 관계, ② 동료와의 관계, ③ 일의 만족도, ④ 직장에 대한 자부심, ⑤ 다른 직장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추출되었다.
 - 4)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다변량자료를 각 변수의 유사성에 따라 전체 객체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통계적 분석기법이다.

표 1 근로관의 유형분류

구분	비중	근로관
생계수단형 (한국, 스페인)	19.5%	▷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근로관 - 돈과 일을 가장 중시 - 만족이나 흥미보다 경제성을 중시
자아실현형 (미국)	41.0%	▷ 일과 관계지향적 근로관 - 일의 흥미, 발전가능성, 관계만족도를 고루 중시
관계지향형 (일본)	17.9%	▷ 관계지향적 근로관 - 일의 흥미와 사회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 - 직장 내 관계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중시
보람중시형 (프랑스)	21.6%	▷ 일의 흥미지향적 근로관 - 일의 흥미와 발전가능성을 중시 - 직장에 대한 충성심, 관계 등을 덜 중시

II. 중고령자 근로관의 국제비교

1장에서는 설명한 4개 유형의 대표로 韓, 美, 日, 프랑스를 선정하고, 한국과 같은 근로관 형태를 보여주는 스페인을 포함한 5개국의 근로관 관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2장은 중고령자인 50~64세를 대상으로 근로관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고령자는 수입이 생기는 일에 시간 사용을 늘리고 싶어 하고, 미국 중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점수가 높고 한국이 가장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지금만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프랑스 중고령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시간사용 선호도

구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	2.79	2.71	2.81	2.74	3.6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4.31	3.43	3.62	3.88	3.62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3.70	3.51	3.53	3.65	3.22
여가활동 시간	3.96	3.71	3.57	4.06	3.47

주: 5점(지금보다 매우 많이), 4점(지금보다 다소 많이), 3점(지금 쓰고 있는 만큼), 2점(지금보다 다소 적게), 1점(지금보다 매우 적게)

미국 중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그다음으로 여가활동,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순으로 지금보다 늘리고 싶어 한다. 반면,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고령자는 여가활동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그다음으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순으로 지금보다 늘리고 싶어 한다. 반면,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중고령자는 여가활동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그다음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순으로 지금보다 늘리고 싶어 한다. 반면,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중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그다음으로 여가활동,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순으로 지금보다 늘리고 싶어 한다. 반면,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싶어 하지만,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시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고 싶어 한다.

스페인 중고령자들은 일을 단지 돈벌이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으면 일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한국과 일본 중고령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에 대해 스페인 중고령자는 찬성하는 편이고, 미국 중고령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중고령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보였다.

돈 벌 필요가 없어도 돈 받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 일본 중고령자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한국의 중고령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스페인 중고령자만이 부정적으로 답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으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5개국 중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에 대한 가치관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48	3.13	3.53	2.75	3.26
돈을 벌 필요가 없더라도 나는 보수를 받는 일을 가지고 싶다	3.42	3.70	2.83	3.41	3.66

주: 5점(매우 찬성), 4점(다소 찬성), 3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2점(다소 반대), 1점(매우 반대)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5개국 중고령자 모두 4점 이상이라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페인 > 한국 > 프랑스 > 미국 > 일본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소득도 5개국 모두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스페인 > 한국 > 프랑스, 일본 > 미국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2.65점으로 스페인의 4.25점과 1.60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의 흥미에 대해서도 4개국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일 관련 중요도

구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고용의 안정성	4.48	4.19	4.68	4.51	4.56
높은 소득	3.97	3.98	4.56	3.98	4.31
발전 가능성	4.11	2.65	4.25	3.87	4.17
일의 흥미	4.50	3.90	4.28	4.61	4.30
독자적 일 수행	4.20	3.21	4.07	3.69	3.82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4.32	3.73	4.17	3.63	4.17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	4.36	3.86	4.17	3.83	4.29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3.49	3.44	4.02	3.58	3.87
평균	4.18	3.62	4.28	3.96	4.19

주: 5점(매우 중요함), 4점(다소 중요함), 3점(보통), 2점(별로 중요하지 않음),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중고령자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다음으로 스페인과 한국의 중고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 중고령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미국, 한국, 스페인 중고령자는 다소 중요시한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하는 시간과 날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페인 중고령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중고령자는 일과 관련된 중요도를 따질 때 일의 흥미 > 고용의 안정성 > 사회에 유익 > 타인에 도움 > 독자적 일 수행 > 발전 가능성 > 높은 소득 > 시간과 날짜 선택권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고령자는 고용의 안정성 > 높은 소득 > 일의 흥미 > 사회에 유익 > 타인에 도움 > 시간과 날짜 선택권 > 독자적 일 수행 > 발전 가능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중고령자는 고용의 안정성 > 높은 소득 > 일의 흥미 > 발전 가능성 > 사회에 유익과 타인에 도움 > 독자적 일 수행 > 시간과 날짜 선택권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중고령자는 일의 흥미 > 고용의 안정성 > 높은 소득 > 발전 가능성 > 사회에 유익 > 독자적 일 수행 > 타인에 도움 > 시간과 날짜 선택권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고령자는 고용의 안정성 > 높은 소득 > 일의 흥미 > 사회에 유익 > 발전 가능성, 타인에 도움 > 시간과 날짜 선택권 > 독자적 일 수행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고령자는 자영업, 중소기업, 민간기업을 더 선호하고, 일본 중고령자는 임금근로, 대기업, 민간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중고령자는 임금근로,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더 선호하고, 프랑스 중고령자는 임금근로, 중소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더 선호하고, 한국 중고령자는 자영업,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취업형태 및 직장 선호도

구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임금근로 대 자영업	1.43	1.64	1.71	1.61	1.30
중소기업 대 대기업	1.75	1.48	1.33	1.53	1.47
민간기업 대 정부 및 공공기관	1.69	1.54	1.42	1.47	1.40

주: 2점(임금근로, 중소기업, 민간기업), 1점(자영업,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프랑스의 공기업 근로자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일찍 퇴근하고, 공기업 특별연금 제도를 활용해 더 풍족한 노후를 즐겨왔다. 공기업 근로자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3년 적은 37.5년을 일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은퇴 후의 연령수급기간도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7년 더 긴 25년이다.

한국 근로자가 자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발휘보다는, 불황과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안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호황기일 때 자영업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전병유, 2003). 한국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청년실업 등 민간기업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및 이직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영업 진출을 모색한다. 한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선호가 높은 것도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직업가치관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한국은 단지 생계 수단으로서의 자영업 선택이 대다수이다. 미국 자영업자들의 직업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직업 집단 등 사무직의 비율도 높은 편이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대다수가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최문경·이명진 2005).

취업형태에 따라 현재 하는 일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자영업 > 민간기업 > 정부기관 순으로 현재 하는 일의 만족도가 높고, 일본은 자영업 > 정부기관 > 민간기업 순이다. 스페인은 자영업 > 공공기관 > 정부기관 > 민간기업 순이고, 프랑

5) Blanchflower (2000)가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한 결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실업률이 낮을 때 자영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우영, 2002).

자 유 논 문

스는 자영업 > 정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개국 모두 자영업 종사자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비해, 한국은 정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자영업 순으로 나타나 자영업자가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국가별 취업형태에 따른 현재 하는 일의 만족도

구 분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영업	총계
미국	5.34	-	5.55	5.89	5.58
일본	5.12	-	4.97	5.43	5.09
스페인	5.36	5.40	5.32	5.96	5.47
프랑스	5.06	4.90	4.82	5.09	4.93
한국	5.40	5.20	4.66	4.41	4.55

주: 1. 미국과 일본은 공공기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2. 7점(전적으로 만족), 6점(매우 만족), 5점(다소 만족), 4점(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3점(다소 불만족), 2점(매우 불만족), 1점(전적으로 불만족)

미국과 프랑스의 중고령자는 임금근로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강하나, 일본, 스페인, 한국은 임금근로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임금근로가 가정생활에 더 방해가 된다는 의견에 대해 5개국 모두 그저 그렇다였지만, 그 중에서 한국은 덜 방해가 된다는 경향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자영업과 임금근로에 대한 가치관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임금근로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3.30	3.82	3.62	3.16	3.76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임금근로를 하는 것이 가정생활에 더 방해가 된다	2.97	2.81	3.16	3.06	2.69

주: 5점(매우 찬성), 4점(다소 찬성), 3점(중립), 2점(다소 반대), 1점(매우 반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중고령자는 다소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스페인, 프랑스의 중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유익한가에 대해 한국 > 프랑스 > 일본 > 미국 > 스페인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노동조합 관련 인식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3.33	3.98	3.46	3.22	3.84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3.48	3.63	3.45	3.77	3.85

주: 5점(매우 찬성), 4점(다소 찬성) 3점(중립), 2점(다소 반대), 1점(매우 반대)

중고령자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일본 > 미국 > 프랑스 > 한국 >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77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페인은 1.44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현재 일을 하는지 여부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1.71	1.77	1.44	1.63	1.58

주: 2점(현재 일함), 1점(현재 일하지 않음)

현재 일하는 시간과 수입에 대해 5개국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 프랑스 > 미국 > 스페인 > 일본 순으로 일하는 시간을 다소 늘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점수는 2점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로 나타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일에 대한 선호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2.17	2.01	2.16	2.22	2.27

주: 3점(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 2점(현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1점(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겠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안정성에 대해 스페인 > 미국 > 일본 > 프랑스 >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2.97로 보통에 가까운 반면, 나머지 4개국은 다소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수입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다가 대세이지만, 미국, 스페인, 일본은 보통에 가깝고, 한국과 프랑스는 별로 많지 않다가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일본은 1.82로 가장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흥미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일본 > 스페인 > 한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과 프랑스는 다소 흥미가 있다에 가깝고, 한국은 3.03으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한국 > 스페인 > 일본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과 나머지 4개국 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한국 > 일본 >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나머지 4개국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지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스페인 > 일본 > 한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다소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술 향상 기회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일본 > 스페인 > 한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이 다소 그렇다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다소 그렇다에 근접한 정도인 반면, 스페인과 한국은 보통에 가까웠다.

미국은 타인에게 도움 > 사회적으로 유익 > 일의 흥미 > 일의 독자성 > 기술 향상의 기회 > 안정성 > 발전 가능성 > 높은 수입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유익 > 안정성 > 일의 흥미 > 타인에게 도움, 기술 향상의 기회 > 일의 독자성 > 높은 수입 > 발전가능성 순으로, 스페인은 안정성 > 사회적으로 유익 > 일의 흥미 > 타인에게 도움 > 일의 독자성 > 기술 향상의 기회 > 높



은 수입 > 발전가능성 순으로,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유익 > 일의 흥미 > 타인에게 도움 > 일의 독자성 > 안정성 > 기술 향상의 기회 > 높은 수입 > 발전가능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의 독자성 > 타인에게 도움 > 사회적으로 유익 > 기술 향상의 기회 > 일의 흥미 > 안정성 > 높은 수입 > 발전가능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안정적이다	3.81	3.65	3.92	3.56	2.97
수입이 많다	2.72	2.61	2.70	2.38	2.33
발전 가능성이 크다	2.80	1.82	2.50	2.03	2.29
흥미가 있다	4.15	3.50	3.48	3.93	3.03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다	4.13	2.95	3.39	3.69	3.60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4.26	3.47	3.40	3.85	3.57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	4.16	3.71	3.81	3.97	3.39
일을 통해 일과 관련된 기술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03	3.47	3.34	3.52	3.06
평균	3.76	3.15	3.32	3.37	3.03

주: 5점(매우 그렇다), 4점(다소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별로 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일 스트레스는 5개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각국의 근로자 모두 일에 지친 상태로 집에 오는 경우는 가끔 있으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의 중고령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12 일 관련 피로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일에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3.25	3.03	3.30	3.39	3.21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경우	2.38	2.46	2.85	2.33	3.17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3.26	3.13	3.18	3.44	3.34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하는 경우	2.07	2.02	2.27	1.82	2.50

주: 5점(항상 있다), 4점(자주 있다) 3점(가끔 있다), 2점(별로 없다), 1점(전혀 없다)



자유 논문

근무시간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개국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본 > 스페인 > 한국 > 프랑스 > 미국 순으로 일본 중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사적인 시간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일하는 시간 중 사적인 일을 위해 한두 시간 사용하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3.06	2.58	2.74	2.85	2.79

주: 4점(전혀 어렵지 않다) 3점(별로 어렵지 않다), 2점(다소 어렵다), 1점(매우 어렵다)

과거의 일 경험과 기술을 현재의 일에 활용하는 정도에 대해 미국 > 프랑스 > 한국, 일본 >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국 모두 약간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경험과 기술을 미래의 일에 활용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랑스 > 스페인 > 일본 >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고령자가 일 경험과 기술을 연계해 가장 잘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과 스페인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일의 연계성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 14 일 경험과 기술의 활용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과거에 일하면서 얻은 경험·기술이 현재 일에 활용되는 정도	3.12	2.61	2.59	2.80	2.61
새로운 일을 찾을 때 현재 일하면서 배운 경험·기술이 도움이 되는 정도	3.39	2.89	2.92	3.15	2.72

주: 4점(매우 도움), 3점(다소 도움), 2점(별로 도움 안 됨), 1점(전혀 도움 안 됨)

지난 1년 동안 일과 관련된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미국(53.9%) > 프랑스(41.0%) > 일본(36.0%) > 한국(27.9%) > 스페인(20.2%)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고령자의 교육훈련 비중에 비해 한국은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의 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이동이 높은 사회일수록 근로자는 이직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에 투자한다. 노동이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근로자가 범용성이 높은 일반적 숙련에 투자하는 반면, 노동이동이 가장 제한적인 일본의 근로자는 이직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기업 특수 숙련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기업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훈련에 치중하지만, 일본기업은 저숙련 근로자 양성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도 노동이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 경험과 기술의 범용성은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15 노동이동률의 국제비교

(단위:%)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6.80	4.32	4.83	4.66

주: 미국(2007), 일본(2006), 프랑스(1990~91의 월평균치), 한국(2007), 노동이동률 = 이직률 + 입직률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DB ;

日本 厚生労働省, 『毎月労働統計調査』 ; OECD, Employment Outlook (1996) ; 노동부, 노동통계 DB

5개국 모두 관리자와 종업원 관계에 비해 직장동료 간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관리자와 종업원 사이의 인간관계는 다소 좋다는 가까운 편이나, 프랑스는 3.40으로 그저 그렇다는 가깝게 조사되었다. 직장동료들 사이의 인간관계는 5개국 모두 다소 좋다는 나타났다.

표 16 직장 내 인간관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관리자와 종업원	3.94	3.85	3.80	3.40	3.89
직장 동료 간	4.27	4.03	4.00	3.91	3.93

주: 5점(매우 좋다), 4점(다소 좋다), 3점(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2점(다소 나쁘다), 1점(매우 나쁘다)

일본은 팀 단위의 업무가 많고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근로문화가 일반적이어서 동료 간의 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한국 근로자는 일본 근로자보다 가족주의, 관계지향성, 감정지향성의 정도가 높은 반면, 공사구분을 잘 못하는 등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일 헌신도⁹⁾가 상대적으로 낮다(장상희·조정문, 2004).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4.5점 이상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4.55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만족도는 미국 > 스페인 > 일본 > 프랑스 >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현재 하는 일의 만족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5.59	5.09	5.47	4.93	4.55

주: 7점(전적으로 만족), 6점(매우 만족), 5점(다소 만족), 4점(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3점(다소 불만족), 2점(매우 불만족), 1점(전적으로 불만족)

미국은 개인주의와 청교도적 근로관에 근거한 근로윤리가 강하며, 이러한 근로윤리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높은 만족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청교도적 근로관은 자신의 직업을宿命으로 여기고, 어떤 직무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 믿는 미국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⁷⁾, 사회 평판이나 회사의 명성보다는 일에 대한 자율성과 흥미, 봉급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명확한 직무 이력서에 근거한 채용, 노동이동의 자유성 또한 일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 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직업 귀천의식으로 인한 부적합한 직업 선택과 고용 불안정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고, 일에 대한 흥미나 가치보다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전공과 적성에 상관없이 일단 취업부터 하고보자는 ‘묻지마 취업’이 증가하고, 입사 후 직무 변경이나 전직 등이 자유롭지 않아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6) 일 헌신은 노동자가 ‘일에 대해 갖는 강한 의무감과 일을 인생의 핵심 관심사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7)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직업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업의 귀천의식을 나타내는 직업위세 점수 차이가 한국(1.99)>독일(1.54)>일본(1.40)>미국(0.93) 순으로 나타남 (장홍근 외, 2006)

또한 한국인이 일에 대한 최우선 순위이자, 기본 전제로 꼽는 고용 안정성의 약화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실력 중심의 성과주의와 수평적인 조직 침투가 중년층과 청년층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⁸⁾ 특히 직장의 선배가 후배를 보살피 제 몫을 다하는 인재로 키운다는 일본기업의 바람직한 인재육성 전통이 파괴되어 연공서열을 기본 틀로 생각하는 중장년층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퇴직은 기업문화와 업계관습을 젊은 사원들에게 원활히 계승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일본경제가 호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돈, 지위가 아니라 삶의 보람과 정신적인 만족감 등 자기실현을 중시한다. 돈과 지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기업의 성과주의는 젊은 근로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는 미국 > 한국 > 일본 순으로 강하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다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에 대한 자부심은 미국 > 일본 > 스페인 > 한국 >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고, 5개국 모두 그렇다는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고령자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프랑스는 2.3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금전을 이유로 이직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표 18 직장에 대한 충성심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4.12	3.62	3.00	2.63	3.99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4.17	3.81	3.76	3.47	3.68
다른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다	2.93	3.76	2.62	2.31	3.20
평균	3.74	3.73	3.13	2.80	3.62

주: 5점(매우 찬성), 4점(다소 찬성), 3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2점(다소 반대), 1점(매우 반대)

일본 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조건에 따라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가장 낮은 편이다. 수직적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은

8) (2005. 10). "社員のやる気も他人任せ 人を育てぬ企業に未来なし." 『Wedge』. 26-30.

전통적으로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회사와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불황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회사나 일보다는 개인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많이 약화되었다.

프랑스는 다른 복지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이 별도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충성심은 없는 편이다. 복리후생 기준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타사보다 더 나은 복리후생을 제공할 유인동기가 약하고, 미국기업과 같이 복리후생을 기업경쟁력의 하나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상시 구조조정 등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약화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직장을 구하는 것의 난이도에 대해 미국과 스페인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프랑스, 한국, 일본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이직에 대해 중고령자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현 직장을 그만둘 때 직장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5개국 중고령자 모두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본인은 직장을 구하기가 다소 어렵고, 대체인력 구하기는 보통이라고 생각해 이직이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 19 이직 난이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직장 구하기	2.98	2.00	2.71	2.35	2.23
자신을 대신할 대체인력 구하기	3.13	3.00	3.24	3.52	3.00
구인-구직 간 차이	0.15	1.00	0.53	1.17	0.77

주: 5점(매우 쉽다), 4점(다소 쉽다) 3점(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2점(다소 어렵다), 1점(매우 어렵다)

기업 간 노동이동이 제한적인 사회일수록 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경향이 강하다. 미국이 기업은 入職口와 退職口가 모두 넓은 외부노동시장 의존형으로 미국의 이직률은 일본의 3.2배이지만 입직률도 3.3배이다. 담당 직무의 시장가치에 의해 보수가 정



해지는 직무급제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을 入職口와 退職口가 모두 좁은 강력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근속기간에 따라 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법적 규제보다는 일본 경영자의 해고 기피성향이 해고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도 강력한 내부노동시장으로 인해 노동이동이 제한적이거나 프랑스는 경쟁력 있는 민간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난을 완화하고 있다. 2006년 현재 Adecco, Manpower, VediorBis와 Challenger 4社가 프랑스 노동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Centrale de Cas et de Medias Pedagogiques, 2006).

미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한국은 노동이동성(job mobility)에 제약이 있는 편이다. 미국의 인구는 일본의 2배이지만, 기업의 수는 일본이 500만 개, 미국은 3,800만 개사로 노동력 수급에 있어 미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폐쇄된 노동시장으로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1년 이내 이직할 가능성은 프랑스 > 미국 > 스페인 > 한국 > 일본 순인데, 특히 일본은 1.28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프랑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페인 > 한국 > 프랑스 > 일본 > 미국 순으로 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스페인과 한국 중고령자가 실직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표 20 이직 가능성과 실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1년 이내 이직 가능성	1.76	1.28	1.61	2.03	1.44
실직 가능성에 대한 우려	1.62	1.86	2.13	1.87	2.05

주: 4점(매우 높다), 3점(다소 높다), 2점(다소 낮다), 1점(매우 낮다)

실직을 면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미국 중고령자는 새로운 기술 요구 > 임시직 > 낮은 수입 > 장거리 직장 순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본 중고령자는 새로운 기술 요구 > 임시직 > 낮은 수입 > 장거리 직장 순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미국 중고령자에 비해 그 수용도가 낮은 편이다. 스페인 중고령자는 새로운 기술 요구 > 임시직 > 장거리 직장 > 낮은 수입 순으로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중고령자는 새로운 기술 요구 > 임시직 > 장거리 직장 > 낮은 수입 순으로 응답했고, 한국 중고령자는 새로운 기술 요구 > 낮은 수입 > 임시직 > 장거리 직장 순으로 응답했다.

표 21 실직을 면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새로운 기술 요구	4.08	3.19	3.65	3.95	3.54
낮은 수입	3.34	2.78	2.66	2.65	3.40
임시직	3.81	2.86	3.08	3.09	3.21
먼 거리의 직장	3.20	2.39	2.91	2.90	3.13

주: 5점(매우 찬성), 4점(다소 찬성), 3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2점(다소 반대), 1점(매우 반대)

III. 정책적 시사점

1. ‘일의 보람’ 과 ‘관계의 만족’ 제고가 시급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 등 ‘근로 본연의 의미 찾기’는 개인의 존엄성 확인에서 시작된다. 어떤 직무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匠人’이나 ‘達人’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고용시스템, 그리고 일상적 근로 생활에서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선택지(選擇肢)를 확장시켜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들이 ‘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개인의 흥미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직무를 배치하고, 경력관리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자계 기업들의 경우, 직무 空席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하고, 관심 있는 직원들의 지원과 내부 이동을 장려하는 프로세스가 일반화되어 있다.



개인시간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배려,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회사와 일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노동이동성이 강화될 경우 일의 만족도와 在職者의 자부심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보상체계와 고용관행 등은 노동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연공 중심의 보상시스템을 직무가치와 능력에 의해 평가·보상받는 직무 중심으로 전환시켜감으로써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무·역할의 난이도와 실적에 따라 차등 보상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화

지난 1년 동안 일과 관련된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사례가 미국의 중고령자에 비해 한국은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중고령자의 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2004)에 따르면, 50~64세의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9.6%로 OECD 조사대상국 1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미국 39.9%, 영국 34.3%, 노르웨이 40.0%, 독일 44.5%, 프랑스 36.4%).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행 중이고, 지식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중고령자는 노동시장 위협성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으며, 대학교육 이후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자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학졸업자는 초과 공급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필요 인력과 미스 매치되어 근로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자리 문제가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각도에서 노출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위협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직업교육관점에서 전개되다 보니, 단순기술 습득이나 학점은행제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평생학습참여율이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 10.5%, OECD 평균 18.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고령화·지식기반·양극화·고학력 사회에서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우영 (2002). “경기변동과 자영업의 성장.” 『경제연구』, 11(2), 217-247.
- 장상희·조정문 (2004).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39-80.
- 장홍근 외 (2006).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최문경·이명진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최숙희 외 (2008). “근로관의 국제비교-일의 보람과 관계의 만족을 중심으로” (CEO Information 제657호), 삼성경제연구소.
- Blanchflower, David G. (2000).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Labour Economics*, 7(5), 471-505.
- Centrale de Cas et de Medias Pedagogiques (2006). *Bibliographie de Cas et de Médias Pédagogiques*.
- Edgar and Borgatta, Marie L. (1992).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 Som, A. (2003). Redesigning the Human Resources Function at Lafarge. *Human Resource Management*, 42(3), 271-288.
- www.issp.org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백학영** · 윤민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빈곤 노인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빈곤노인과 농어촌 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서비스 접근성이 좋을수록 복지서비스 이용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의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설의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서비스 접근성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서비스 접근성,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빈곤, 농어촌, 위계적 일반선형모형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05년 9.1%에서 2020년에는 15.7%로 증가하다가 2050년이 되면 38.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 2004).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7%일 때 고령화 사회, 14%일 때 고령사회, 21%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지칭을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115년이 걸렸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우리와 고령화 속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증가속도라면 고령

*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세계학술대회(2007년 10월)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고령화 국가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이다. 외국의 경우는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노인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의 개발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른 관계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적은 반면에 준비를 해야 할 내용이 많은 실정이다.

노인들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집 근처에 위치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정도였으며, 많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때 노인들이 찾아가기 쉬우면서, 이용할 프로그램이 많은 시설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때 노인의 사회참여 및 서비스 이용의 적극성은 증가하고, 노인에게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주어, 노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인 무위고(無爲苦)나 소외 등의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권중돈, 2007). 지금까지 서비스 접근성의 개념은 지리학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이지만, 사회복지 시설의 위치나 서비스 대상자의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접근성은 사회복지학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가구가 인식한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이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만드는데 있어 지역적·연령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논의

1.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우리 사회는 최근 몇 십년 동안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는 듯하다. 이에 따라 1997년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즉, 노인의 빈곤문제는 소득보장과 주택보장을 통해, 건강문제는 건강보장을 통해, 그리고 고독과 소외, 무위고(無爲苦)의 문제는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일상생활의 의식주 문제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돈, 2007).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주요하게 욕구(need)와 제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나 표현된 또는 잠재적인 욕구 및 노년기의 위기와 갈등에 대처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강용규, 2006). 그리고 노인들의 의료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 등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는 발달되어 왔다(Hooyman and Kiyak, 2002). Atchely(1994)

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의 기능수준을 개선시켜 주거나 적절한 수입, 건강보호, 주택, 이동 또는 사회적인 참여와 관련된 어려움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것의 종류에는 경제적 보조, 정보제공과 의뢰, 상담, 교육, 신체적 원조, 허드렛일 서비스, 주택임대료 보조금, 무료급식 등이 포함된다. 결국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뿐 아니라 전체 노년층의 일상생활상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뜻한다고 하겠다(강유진·강효진, 2005).

이외에도 박차상 외(2002)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세분화, 전문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등은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병원, 제도적 환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노인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기초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인과 그 가족이 선택하게 하고, 양질서비스를 옹호하며, 서비스 제공선비장벽을 극복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이 대부분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박차상 외, 2002; 이가옥·이미진, 200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인지율 및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부족, 실 이용자원제한, 서비스 질의 저조 등과 연관된다고 본다.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주요하게 Andersen과 Newman의 행동주의 모델(Behavioral Model)을 적용하였다(이인정, 2004; 송다영, 2003; 박경숙, 2003a; 이가옥·이미진, 2001). 이가옥과 이미진(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에 비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의 향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의향 확률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은 가정봉사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서비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이용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도 있다(Mitchell and Krout, 1998).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송다영(2003)은 노인의 건강상태

나 부양자의 부담과 같은 욕구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수준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과 가구 소득수준간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소득수준이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정(2004)은 노인과 노인수발자의 특성, 가족수입과 사회적 지지, 노인의 기능적 특성들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교육수준과 정서적 지지의 수준은 더 높을수록, 노인의 인지적 기능 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중요시되어 온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도와 같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손상이 재가복지 이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 수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우울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이 나타났다. 박경숙(2003a)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노인들의 경우 생계비 지원, 가정봉사원 등의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수혜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 노인은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도시와 농촌이 서비스 분포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도시와 농촌 거주여부, 시설의 위치와 프로그램 현황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친구들의 수,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수,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 또는 연구시기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고승덕, 1999).

2. 서비스 접근성

Baker(2003)는 “서비스 접근성이란 적합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Baker, 2003: 3).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에 최적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편리한 시

간에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예약 대기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용료를 받으며, 그리고 개인, 자원, 시설, 정책 등이 클라이언트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기관에 찾아오기 쉽도록 문턱이 없거나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개념은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이지만,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과 측정이 어려운 점,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접근성보다 비용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를 선택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입지조건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은 그 이후에 고려되는 문제인 것이다.

접근성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개념으로, ‘동등한 욕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동등한 접근성은 서비스를 향유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적 비용이 동일하다는 의미로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관점에서 ‘접근성의 평등은 곧 기회 평등’이라고 해석한다(Le Grand, 1987; 김경호, 2004에서 재인용). 만약 두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놓쳐버린 기회가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그 두 사람은 당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Mooney, 1994). 그러나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접근성을 해석하는 것은 서비스의 공급측면만을 고려하여 수요의 측면인 ‘동등한 욕구에 따른 동등한 이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김경호, 2004: 170). 김경호(2004)는 접근성의 평등이 이용의 평등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이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Culyer and Wagstaff, 1993; Andersen and Aday, 1978; 김경호, 2004에서 재인용). 접근성 자체는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접근성 측정의 어려움과 접근성보다 이용이 측정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종종 접근성의 대체물로(proxy)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두 개념은 실제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김경호, 2004).

그렇다면 이 때,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주요한 문제가 된다. 서

비스 접근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이론으로 접근은 사회복지학보다 지리학에서 많이 발전된 개념이다. 먼저 지리학에서의 접근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접근성의 개념은 출발지(origins)와 도착지(destinations)라는 공간적인 분리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20세기에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21세기에 들어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접근성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던 적도 있다(Weber, 2006). 그러나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이슈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접근성은 사회정의, 사회적 포용성, 접근성 그리고 욕구와 권리 등의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논의되었다(Preston and Raje, 2007).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Social Exclusion Unit” 정책을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처 사이의 거리와 서비스의 질과 양은 접근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Omer, 2006). 이 때 거주지와 서비스 제공처 사이의 거리는 최소거리(minimum distance)로 측정하며 서비스의 질과 양은 서비스 수용량(container)으로 주요하게 측정된다. 접근성을 시설에 오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도보로 이동하여 이용방법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Gijsbertsen and Herbst, 2006). 그래도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의 경우 도보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Gijsbertsen and Herbst, 2006).

미국 재향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치료자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할수록 치료의 질이나 횟수가 적었으며,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McCarthy et al., 2007). 이 연구는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성을 정의하며, 접근성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도나 대중교통 이용 형태 및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 연구는 김경호(2004)와 유성호(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형평성(equity)의 관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분포적 형평성을 살펴본 김경호(2004)는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시설 정원수로 기회의 평등을 측정하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인원의 수로 이용의 평등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04년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공급과 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크기로

측정되는 욕구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에 관한 유성호의 연구(2001)에서는 접근성을 도보를 이용하거나 복지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관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복지관을 더 자주 이용한다는 외국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Krout, 1991).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근접성(거리적 접근성)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유성호(2001)의 연구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서 접근성의 문제의식을 제기한데 의의가 있지만, 버스나 자가용,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측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중 517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하여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김미곤 외, 2006).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본 연구는 2,615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398명(개인 가중치 적용 시 2,25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에 투입되는 모든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3,384명(개인 가중치 적용시 2,139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한국복지패널의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제시된 결과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수

치들이다.

분석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빈곤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서비스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의 차이는 T-test 분석을 하였다.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종속변수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로 이분 변수인 점과 자료의 다층적 구조를 반영하여 위계적 일반선형모형(HGLM; hiera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는데, 이 때 개인의 특성은 지역 특성에 내재되어(nested)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분변수로 위계적 선형모형(hierachical linea model)의 두 가지 가정인 각 수준(개인 수준, 지역 수준)에서 선형성 가정과 각 수준의 무작위 효과(random effect)의 정규 분포성 가정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Raudenbush and Bryk, 2002; Hedeker and Gibbons, 1994). 위계적 일반선형모형은 노인 개인 특성과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분할함으로써 지역마다의 독특한 또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random effect)을 고려하는 장점을 갖는다(Raudenbush and Bryk, 2002; Teachman and Crowder, 2002).

2. 변수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한 목적은 지나친 친족이나 혈연관계로 인한 사적이전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는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서비스는 공적 복지서비스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적기관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공적 지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분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경로연금지원,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

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서비스, 방문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험한 노인이 없어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갖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은 노인복지서비스 즉, 의료지원,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간호 및 간병 서비스, 교통수단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람이 적합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적합한 기회를 가진 것(Baker, 2003)으로 정의한다. 즉, 서비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제공받고,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처가 가까이에 있거나, 서비스 제공처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Baker(2003)에 따르면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처의 위치와 운영시간, 수용량, 이용료, 시설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며, 지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거리와 서비스 양과 질, 비용적 요소와 관련된다. 서비스 접근성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인 접근성에 초점으로 두어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접근성을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의료기간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한지로 파악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과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의 합으로 하였다.¹⁾

노인의 빈곤 여부는 2005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1(빈곤 노인), 최저생계비 이상일 때 0(비빈곤 노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거주지역은 도시에 거주할 때 0, 농어촌에 거주할 때 1로 하였으며, 이 때 농어

1) 서비스 접근성은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이용 가능하다.'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을 부여하여 이들의 합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였다(최소값 0, 최대값 3).

촌은 군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였으며, 연령은 65~69세를 기준변수로 하여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을 기준변수로 하여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건강상태는 장애가 있거나(비등록 장애 포함)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없을 때 0, 배우자가 있을 때 1로 하였다. 가구형태는 노인이 혼자 살거나 두 명 이상이 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노인가구로 하여 1로 하였으며, 비노인 가구원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0으로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615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2,250명(개인 가중치 적용 후)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노인 중 여성노인이 58.0%로 남성에 비해 16% 포인트 많았으며, 연령은 65~69세가 전 구의 4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70~74세 노인은 28.8%, 75~79세 노인은 15.7%, 80세 이상은 13.4%를 차지하였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전 구의 30.8%가 공식적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37.3%, 중학교 12.2%, 고등학교 이상은 19.6%로 전 구의 약 68%가 초등학교 이하구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노인의 58.9%가 배우자성노함께 살고 있었으며, 11.9%는 장애가 있거나(비등록 장애 포함),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이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특성을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은 19.3%를 차지하였고, 독거노인 외 노인들로만 가구가 구성된 경우는 31.5%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살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50.8%였으며,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49.2%로 나타났다. 2005년 1년 동안 1개월이라도 국민기초보장 수급을 받았던 노인은 9.1%였으며, 2005년 최저생계

비 이하의 가구에 속한 노인은 25.6%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거주 지역을 보면 도시가 80.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빈도	비율
성	남성	994	42.0
	여성	1,306	58.0
	계	2,250	100.0
연령	65~69세	947	42.1
	70~74세	647	28.8
	75~79세	353	15.7
	80세 이상	302	13.4
	계	2,250	100.0
교육수준	무학	693	30.8
	초등	840	37.3
	중학	276	12.2
	고등학교 이상	441	19.6
	계	2,250	100.0
배우자	없음	924	41.1
	있음	1,226	58.9
	계	2,250	100.0
건강문제	없음	1,982	88.1
	있음	268	11.9
	계	2,250	100.0
노인가구형태	독거노인가구	435	19.3
	2인이상노인가구	709	31.5
	다른 비노인가구원 포함	1,106	49.2
	계	2,250	100.0
기초보장수급상태	비수급	2,044	90.9
	수급*	205	9.1
	계	2,249	100.0
빈곤상태 (최저생계비 100% 기준)	비빈곤	1,673	74.4
	빈곤	575	25.6
	계	2,248	100.0
지역	도시	1,819	80.9
	농어촌**	430	19.1
	계	2,250	100.0

* 수급여부 : 1개월이라도 수급을 받은 경우 수급가구로 간주

**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은 농어촌으로 구분

자유 논문

사회복지시설 접근성과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의 합으로 측정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은 평균 1.792로 나타났으며, 복지접근성 중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은 0.384, 의료시설 접근성은 0.630, 대중교통 접근성은 0.779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이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비스 접근성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접근성	2,250	0	3	1.792	1.100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2,248	0	1	0.384	0.486
의료시설 접근성	2,250	0	1	0.630	0.483
대중교통 접근성	2,248	0	1	0.779	0.415

전체 노인 중 14.4%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대부분이 하나나 둘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내용별로 이용률을 보면, 의료지원서비스 이용자가 11.0%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지원 서비스 5.5%, 무료급식 서비스 2.6%, 식사배달 서비스 1.9%로 나타났다.

표 3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빈도	비율
경험여부	없다	1,919	85.6
	있다	321	14.4
	전체	2,240	100.0
이용 서비스 수	0	1,919	85.6
	1	185	8.3
	2	87	3.9
	3	37	1.7
	4	8	0.3
	5개 이상	5	0.2
	의료지원	없다	1,994
있다		246	11.0



		빈도	비율
노인무료급식	없다	2,182	97.4
	있다	58	2.6
물품지원	없다	2,117	94.5
	있다	123	5.5
경험여부	없다	1,919	85.6
	있다	321	14.4
	전체	2,240	100.0
이용 서비스 수	0	1,919	85.6
	1	185	8.3
	2	87	3.9
	3	37	1.7
	4	8	0.3
	5개 이상	5	0.2
의료지원	없다	1,994	89.0
	있다	246	11.0
노인무료급식	없다	2,182	97.4
	있다	58	2.6
물품지원	없다	2,117	94.5
	있다	123	5.5
가정봉사	없다	2,231	99.6
	있다	9	0.4
식사배달	없다	2,197	98.1
	있다	43	1.9
방문간호, 간병	없다	2,231	99.6
	있다	9	0.4
교통수단지원	없다	2,203	98.4
	있다	37	1.6
주간보호	없다	2,239	99.9
	있다	1	0.1

2. 경제적 상태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이용의 차이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은 주요하게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이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공적연금은 보편적인 방식에 기초하는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은 선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공적 노인복지서비스

의 경우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빈곤계층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보면, 비빈곤 노인 1.866, 빈곤 노인 1.576으로 비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2배 빈곤 노인보다 높았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의 세부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모두에서 비빈곤 노인의 접근성이 빈곤 노인에 비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거주 지역과 긴밀히 관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고(김미곤 외, 2006), 도시지역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로 시설이 더 발달되어 교통이 농어촌에 비해 더 편리하다(정정희 외, 2005). 즉, 빈곤하지 않은 노인일수록 사회적인 인프라가 더 발달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서비스 접근성	비빈곤	1,673	1.866	1.085	.290	5.411***
	빈곤	575	1.576	1.116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비빈곤	1,671	.408	.492	.097	4.268***
	빈곤	575	.311	.463		
의료시설 접근성	비빈곤	1,673	.662	.473	.127	5.319***
	빈곤	575	.536	.499		
대중교통 접근성	비빈곤	1,672	.796	.403	.067	3.205***
	빈곤	575	.729	.445		

*** p <.0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많은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특성은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은 이용하는 결과를 보



였다. 빈곤 노인의 26.0%가 2005년 1년 동안 노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빈곤 노인의 10.2%에 비해 약 14%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한 기관 수도 빈곤 노인이 0.4개로 비빈곤 노인의 0.2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하지원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물품지원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은 빈곤 노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복지이용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이용여부	비빈곤	1,665	.102	.303	-.158	-7.978***
	빈곤	574	.260	.439		
이용수	비빈곤	1,665	.159	.558	-.286	-7.315***
	빈곤	574	.445	.876		
의료지원비	비빈곤	1,665	.076	.266	-.128	-7.107***
	빈곤	574	.205	.404		
무료급식	비빈곤	1,665	.016	.124	-.041	-4.015***
	빈곤	574	.056	.231		
물품지원	비빈곤	1,665	.033	.179	-.082	-5.850***
	빈곤	574	.115	.319		
가정봉사	비빈곤	1,665	.003	.058	-.002	-.665
	빈곤	574	.005	.073		
식사배달	비빈곤	1,665	.013	.112	-.025	-2.941**
	빈곤	574	.037	.190		
방문 간호, 간병	비빈곤	1,665	.004	.060	-.001	-0.404
	빈곤	574	.005	.069		
교통수단 지원	비빈곤	1,665	.014	.118	-.007	-1.031
	빈곤	574	.021	.143		
주간보호	비빈곤	1,665	.001	.026	.000	.101
	빈곤	574	.001	.024		

*** p <.001, ** p <.01

3. 도시와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이용의 차이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들에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박경숙, 2003b;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 이가옥 외, 1994). 특히 농어촌 노인가구의 ‘탈가족화’ 혹은 ‘핵가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빈곤의 구조적 특징은 노인가구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최현수·류연규, 2003; 구인회, 2002), 우리나라 지리적 구조상 농어촌의 노인들은 빈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도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은 1.946 농어촌 노인의 접근성 1.143보다 약 1.7배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은 도시 0.434, 농어촌 0.161로 도시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이 농어촌에 비해 약 2.6배 더 높아, 의료시설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의 의료시설 접근성은 농어촌에 비해 약 1.9배 더 좋았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은 약 1.7배 더 좋게 나타났다. 앞의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비교할 때, 농어촌 사이의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노인에 비해 도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도시 노인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6 도시와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서비스 접근성	도 시	1,819	1.946	1.050	.804	14.226***
	농어촌	430	1.143	1.071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도 시	1,818	.435	.496	.265	12.324***
	농어촌	430	.169	.376		
의료시설 접근성	도 시	1,819	.693	.462	.326	12.691***
	농어촌	430	.367	.483		
대중교통 접근성	도 시	1,818	.820	.384	.214	8.468***
	농어촌	430	.606	.489		

*** p <.001

도시와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은 <표 7>과 같다. 도시 노인의 14.5%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농어촌 노인은 13.5%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 또한 도시 0.2개로 농어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 서비스의 수는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비스 영역별로 보더라도 가정봉사서비스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도시 노인이 농어촌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아니었다. 다만, 무료급식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시 노인이 농어촌 노인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 노인이 복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는 도시 노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크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거나 도시에 복지자원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지만, 농어촌에 비해 도시의 서비스 접근성이 더 좋은 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도시가 복지자원이 더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 노인이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7 도시와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이용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이용여부	도 시	1,810	.145	.353	.010	.553
	농어촌	430	.135	.342		
이용수	도 시	1,810	.242	.687	.036	1.097
	농어촌	430	.206	.592		
의료지원	도 시	1,810	.108	.311	-.008	-.488
	농어촌	430	.117	.321		
무료급식	도 시	1,810	.031	.174	.027	5.178***
	농어촌	430	.004	.066		
물품지원	도 시	1,810	.056	.229	.004	.367
	농어촌	430	.051	.220		
가정봉사 서비스	도 시	1,810	.003	.059	-.002	-.609
	농어촌	430	.006	.074		
식사배달	도 시	1,810	.020	.140	.005	.704
	농어촌	430	.015	.121		
방문 간호,간병	도 시	1,810	.004	.066	.002	.704
	농어촌	430	.002	.045		
교통수단지원	도 시	1,810	.018	.133	.008	1.365
	농어촌	430	.010	.100		
주간보호	도 시	1,810	.001	.024	.000	-.364
	농어촌	430	.001	.033		

*** p <.001

4.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3개의 하위 모델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델 1은 노인의 개인 특성과 지역특성(농어촌)이 노인복지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모델 2는 모델 1에 서비스 접근성과 농어촌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모형이다. 그리고 모델 3은 모델 2에 빈곤에 대한 농어촌의 상호작용효과까지 추가한 모형이다.



먼저, 모형 1에서 서비스 접근성의 효과를 보면, 서비스 접근성이 좋을수록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의 특성을 통제한 결과로서 노인의 욕구가 동일하더라도 서비스 접근성이 좋을 때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적 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에 비해 무학인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복지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복지욕구가 더 높고 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Mitchell과 Krout(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나 나타났으며, Bass와 Noelker(1987)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과 가정간호서비스(in-home nursing or aide services) 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른 차이거나 연령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이가옥·이미진, 2001). 본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종류에 의한 차이와 함께 연령 이외의 노인은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등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노인의 가구 특성 중에서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노인과 빈곤가구의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복지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이가옥·이미진, 2001),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서비

스는 저소득층을 주요한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욕구를 일차적으로 가족 안에서 해결하지만, 노인들만 살거나 빈곤한 가구의 노인의 가족 안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 지원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노인의 거주지역을 볼 때, 도시에 비해 농어촌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의향에 거주지역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지만(이가옥·이미진, 2001),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표 7>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농어촌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농어촌에 빈곤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구조에서 도시 노인에 비해 농어촌 노인의 복지 욕구가 높음을 시사한다(백학영,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더 낮은 것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 자원이 더 희박하고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접근성과 농어촌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모델 2를 보면, 서비스 접근성이 1단위 증가할 때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1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어촌은 서비스 접근성의 효과를 20.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도시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반면, 농어촌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이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어촌일수록 서비스 이용확률은 낮아지지만, 모델 1과 비교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의 지역적 특성은 그 자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서비스 접근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체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 노인의 개인 특성과 가구특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3은 모델 서비스 접근성과 빈곤여부에 대한 농어촌의 영향까지 고려한 모델로서, 서비스 접근성과 농어촌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모델 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모델 3에서 새롭게 고려한 빈곤여부와 농어촌의 상호작용을 보면, 빈곤한 노인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지만, 농어촌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농어촌 빈곤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도시의 빈곤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낮긴 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모델 3에서 노인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의 영향은 모델 2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다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8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2.143***	.220	.117	-2.233***	.210	.107	-2.119***	.179	.120
접근성	.119+	.062	1.127	.172*	.067	1.188	.158**	.059	1.172
농어촌(기준: 도시)	-	-	-	-.225+	.127	.798	-.204+	.111	.816
빈곤(기준: 비빈곤)	.901***	.134	2.462	.858***	.119	2.359	.849***	.133	2.337
농어촌(기준: 도시)	-	-	-	-	-	-	-.174	.220	.839
여성(기준: 남성)	-.097	.098	.908	-.113	.084	2.384	-.099	.068	.901
연령(기준: 65-69세)									
70-74세	-.016	.136	.984	-.038	.117	.963	-.055	.091	.946
75-79세	0.064	.141	.938	-.073	.122	.929	-.037	.104	.963
80세이상	.036	.146	1.037	.037	.128	1.038	.017	.112	1.017
교육수준(기준: 무학)									
초등	-.433*	.139	.648	-.399**	.124	.670	-.370***	.105	.691
중등	-.453*	.208	.636	-.421*	.178	.657	-.376*	.145	.687
고등이상	-.740***	.199	.477	-.692***	.167	.501	-.599***	.131	.549
건강문제있음 (기준: 문제없음)	.753***	.143	2.124	.689***	.128	1.993	.598***	.113	1.819
배우자있음(기준: 없음)	-.431**	.153	.649	-.384**	.134	.681	-.289*	.112	.749
노인가구 (기준: 비노인가구)	.885***	.131	2.422	.865***	.111	2.374	.744***	.091	2.104
농어촌(기준: 도시)	-.486**	.159	.615	-.221	.230	.802	-.148	.222	.862

*** p<.001, ** p<.01, * p<.05, + p<.10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 3,398명(개인가중치 적용 시 2,250명)을 이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T-test 및 일반적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은 평균 1.792로, 대중교통 접근성,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순으로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이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 전체 노인 중 14.4%가 노인복지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대부분이 하나나 둘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노인복지서비스 내용별로 이용률을 보면, 의료지원서비스, 물품지원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상태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빈곤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2배 더 높았다. 이는 빈곤하지 않은 노인일수록 사회적인 인프라가 더 발달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접근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빈곤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2배 이상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노인복지서비스는 주요하게 저소득층을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노인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로, 본 결과는 공적 노인복지서비스가 표적 집단(target group)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도시와 농어촌의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도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에 비해 도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 도시 노인이 농어촌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도시 노인이 농어촌 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인의 다른 특성들은 전혀 통제하지 않은 결과를 도시인지 농어촌인지의 지역효과는 좀 더 면밀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서비스 접근성을 보면, 노인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좋을수록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복지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에 비해 농어촌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복지 자원이 희박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더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 노인이 비빈곤 노인에 비해 서비스를 월등하게 많이 이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지역 효과가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 및 빈곤여부와 농어촌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 농어촌의 효과는 주요하게 서비스 접근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다. 즉, 서비스 접근성의 효과는 도시와 농어촌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해 으며, 농어촌에서 접근성의 효과가 도시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의 경우 서비스 욕구가 강한 노인들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호작용을 통한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복지서비스 욕구가 강한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²⁾, 농어촌에서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접근성을 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람이 적합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적합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한계

2)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인가구이고, 빈곤한 노인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높은 집단일 것이다. 본 분석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인가구이고, 빈곤할수록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욕구가 강한 노인일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대상자의 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표집된 표본을 조사하였으며,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상태별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서비스 접근성의 다양한 요소 중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였다는데 한편으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서비스 접근성의 다양한 요소와 객관성을 담보한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사회서비스가 욕구의 다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대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실질적 행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복지서비스에 이용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설의 형태가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용규. 2006. 『케어개론』. 서울: 학지사.
- 강유진·강효진. 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김경호. 2004.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분포현황 분석”. 『한국노년학』 24(4): 19-38.
- 김미곤·여유진·이봉주 외. 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오남. 2003. “농촌노인의 건강수준,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2): 5-22.
- 김윤정·최혜경. 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박경숙. 2003a.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 박경숙. 2003b. “노인가구 변화의 인구사회 요인”. 『통계연구』 8(1): 1-32.
-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 9-13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차상·김옥희·엄기욱·이경남·정상양·배창진. 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백학영. 2007.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서미경·오경석·오영희. 1996.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진교. 200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망, 사회적 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59-72.
- 송다영. 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105-128.
- 양옥남. 2002. “노인의 비공식 지지에 대한 인지가 사회서비스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31-250.
- 유성호. 2001.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91-208.
- 윤현숙. 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개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이미진. 2001.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13-124.
- 이인정. 1994. “노년기의 삶의 사건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3: 199-223.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옥.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03-229.
- 최성재·장인현. 200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 최정아·서병숙. 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Ashton, V. 1996. "A study of mutual support between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and their adult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6: 87-100.
- Baker, R. L. 2003. *The Social Work Dictionary*, 5th edition, NASW Press.
- Bass, D. M., and L. S. Noelker. 1987.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ers on Elder's Use of In-home Service: An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84-196.
- Gijsbertsen, B. and K. Herbst. 2006. "Two examples of research in the area of health access and utiliz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3(3): 691-705.
- Hedeker, D. and R. D. Gibbons. 1994. "A random-effects ordinal regression model for multilevel analysis." *Biometrics* 50: 933-944.
- Hooyman, N. R., and H. A. Kiyak. 2002. *Social Gerontology*. Allyn and Bacon.
- Krout, J. 1991. "Senior Center Participation: Findings From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244-257.
- Le Grand, J. 1987. "Equity, health, and health care." *Social Justice Research* 1(3): 257-274.
- McCarthy, J. F., F. C. Blow, M. Valenstein, E. P. Fischer, R. R. Owen, K. L. Barry, T. J. Hudson, and R. V. Ignacio. 2007. "Veterans Affairs Health System and mental health treatment retention among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Evaluating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barriers." *Health Services Research* 42(3): 1042-1060.
- Mitchell, J. and J. A. Krout. 1998. "Discretion and Service Use Among Older Adults: The Behavioral Model Revisited." *Gerontologist* 38(2): 159-168.
- Mooney, G. 1994. *Key issues in health economic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Newman, B. M. and P. R. Newman. 1993.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5th ed. Chicago: The Dorsey Press.
- Omer, I. 2006. "Evaluating accessibility using house-level data : A spatial equity perspective."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30: 245-274.
- Preston, J. and F. Raje. 2007. "Accessibility, mobility and transport-relate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5(2): 151-160.
- Raudenbush, S. and A.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anser, F. B. Gijsbertsen, and K. Herbst. 2006. "Modelling and understanding primary health car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in rural South Africa: An exploration using a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3(3): 691-705.
- Teachman, J. and K. Crowder. 2002. "Multilevel models in family research: So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280-294.
- UN. 2004. *Population Perspectives*.
- Weber, J. 2006.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accessibil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4: 399-4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인력개발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유도하고자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석·박사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 수상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함

우수학위논문 소개

1. '09년 하반기 장려상 수상논문

노인의 사회참여와 질에 관한 연구 -활동영역과 수준을 중심으로
주경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09년 하반기 장려상 수상논문

고령자 경제활동참가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1986~2005년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박진화(대구대학교 석사과정)

3. '09년 하반기 장려상 수상논문

실업크레딧제도가 수급권 및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용취약계층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지은(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노인의 사회참여와 질에 관한 연구

-활동영역과 수준을 중심으로

|주경희*

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실제 노인의 사회참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이 노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는 기존 연구들은 각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한정되었으며,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나 각 사회참여 활동 간의 비교, 사회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통합적인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연구들(김영범·이승훈, 2008; 박경혜·이윤환, 2006; 홍현방, 2005)에서 사회참여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생산적 활동에 관한 연구(윤순덕, 2003; 조운주·이숙현, 2007; 김주현, 2007)에서 역시 세분화하였으나, 사회참여활동이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넓은 범위의 개념(Glass et al., 1995; Utz et al., 2002)이어서 하위 유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보편적인 척도가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사회참여활동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연구들 간에 직접적 비교에 한계를 가진다(박경혜·이윤환, 2006). 그리고 활동수준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활동개수, 활동 빈도, 시간 등으로 측정하여 활동을 자주할수록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활동에 대한 헌신정도나 활동지속의 지, 활동몰입과 같은 활동수준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활동수준을 기존의 측정뿐만 아니라 활동수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포함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leeje210@hanmail.net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참여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 또는 억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연구들(허준수, 2002; Suh, Diener and Fujita, 1995; Leitner and Leitner, 1996; 나항진, 2004)은 사회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종합적인 삶의 질 안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사회참여와 주관적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서 사회참여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종합한 총체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회참여의 활동영역을 크게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활동이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과의 영향력을 밝혀내고 변인과 이론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현재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지역별 층화후 계통추출하여 600명을 조사한 자료 중 사회참여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령과 성별 등 기초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패턴을 보인 13부를 제외하고 총 5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참여활동의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개 사회참여 활동영역별 주당평균 활동시간을 점수화한 참여활동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삶의 질은 한국판 WHOQOL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사회참여의 활동영역과 수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의 세부적인 활동영역, 즉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의 참여여부가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회참여의 활동영역은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 5개 중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자기개발참여활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사교·친교참여활동,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경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을 하면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지원참여활동과 종교참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유의미한 활동영역 3개 중에서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자기개발참여활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경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의 세부적인 활동영역, 즉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의 수준정도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종교참여활동지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189)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으나, 나머지 경제참여활동지수, 사교·친교참여활동지수, 자기개발참여활동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의 세부적인 활동영역, 즉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의 참여여부와 수준이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를 매개로 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가 증가하면 주관적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의 활

동영역에 있어서 경제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를 매개요참여여부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원참여활동과 종교참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참여의 활동수준에 있어서 경제참여활동지수와 종교참여활동지수는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를 매개요참여여부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친교참여활동지수와 자기개발참여활동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연구에서 종합적 그리고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활동이론의 검증을 통해 사회참여의 활동영역에 따라 노년기 역할상실에 대한 대체역할로서 기능한다고 부분적으로 설명되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활동이론의 설명은 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보다 정교한 이론 검증을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한 삶의 질의 변화 등의 후속연구들의 기초적인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실천적 측면에서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보상체계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노화의 정도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의 활동영역과 수준 등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집에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지역별 층화후 계통추출’을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수도권 거주자에 한정하였고, 엄격한 확률표집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표집의 한계로 인해 교육수준이 전국 노인들에 비해 다소 높았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망된다. 그리고 삶의 질의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항목뭉치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참여의 활동영역과 수준과 삶의 질의 어떤 영역이 관련이 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주현(2007).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 민성길 · 김광일 · 박일호(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Korean version of WHOQO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하나의학사.
- 박경혜 · 이윤환(2006). 노인의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2). 275-289.
- 조윤주 · 이숙현(2007). 생산적 활동유형에 따른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차이: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1). 119-145.
- Bukov A., I. Maas, Lampert Thomas(2002). Social Participation in Very Old Ag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Findings From BASE. Journal of Gerontology:PSYCHOLOGICAL SCIENCES 57B(6): 510-517.
- THE WHOQOL GROUP(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 Sci. Med. 41(10) 1403-1409.
- Utz R. L, Carr D, Nesse R, and Wortman C. B.(2002). The effect of widowhood 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An evaluation of activity disengagement and continuity theory. The Gerontologist 42(4) 522-533.

고령자 경제활동참가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1986~2005년 OECD 16개국을 중심으로

| 박진화

I. 연구의 목적

I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의 제도적 요인들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복지국가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비교사회정책연구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노인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상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최근에는 이렇듯 OECD 주요국들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요인들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사회정책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OECD 주요국들이 경험한 고령화사회의 대응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고령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명하여 OECD 주요국들이 경험한 고령화사회의 대응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확대시키고 정책방향을 선택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정책의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변수를 은퇴의 유인요인, 은퇴의 배출요인, 노동시장정책요인으로 구성하여 은퇴의 유인요인으로 연금수급연령과 GDP대비 연금지출비율, 은퇴의 배출요인으로 총 실업률과 고령인구비율, 노동시장정책요인으로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로 독립변수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남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두 개의 변수이다.

요인, 노동시장정책요인으로 구성하여 은퇴의 유인요인으로 연금수급연령과 GDP대비 연금지출비율, 은퇴의 배출요인으로 총 실업률과 고령인구비율, 노동시장정책요인으로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로 독립변수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남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두 개의 변수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수급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수급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총 실업률과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이 낮을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은퇴의 유인요인, 은퇴의 배출요인, 노동시장정책요인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체제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해 OECD 16개국(사민주의 4개국, 보수주의 5개국, 자유주의 7개국) 20개년(1986~2005년)의 총 320개의 사례를 확보하여 결합회귀분석(pooled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먼저 연구대상국가 전부를 포함한 모델의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별로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먼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첫째, 은퇴의 유인요인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은 정적인 관계로, 연금지출비율은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으며,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에게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예상했던 연금제도에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금제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석기간 중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분석대상 국가들의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30%대의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7%대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분석기간이 1990년대 중반까지였다면 연금제도는 남성고령자에게만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은퇴의 배출요인의 경우, 총 실업률은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에게 모두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한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가설과 반대의 방향인 정적

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정책을 더욱 제고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1 전체모형 결합회귀분석 결과

구 분	남 성		여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금수급연령	0.417***	0.035	0.085***	0.020
연금지출비율	-0.388***	0.074	-0.602***	0.056
총 실업률	-0.171***	0.039	-0.161***	0.033
고령인구비율	1.123***	0.078	2.509***	0.090
ALMP지출비율	-0.168	0.211	-0.384*	0.174
PLMP지출비율	-1.237***	0.182	0.007	0.151
상 수 항	31.927***	1.997	-1.025	1.812
Wald $x^2(6)$	949.26		967.48	
prob> x^2	0.0000		0.0000	
사 례 수	320(16개국×20년)		320(16개국×20년)	

*p<.05, **p<.01, ***p<.001

셋째, 노동시장정책요인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은 예상과 다르게 남성고령자에게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여성고령자에게는 가설과 반대의 방향인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효과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¹⁾ 무엇보다 OECD에서 제공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자료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작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한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은 남성고령자에게만 가설의 방향과 같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관대한 실업급여가 남성고령

1) 강철희·김영범(2001)은 그들의 연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총 지출비율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인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고용보조프로그램은 정규노동자를 실업자인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인해 고용보조에 대한 지출증가는 오히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서비스의 경우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의 조기퇴직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성고령자에게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고령자에게 실업급여가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정책요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민주의국가에서 남성고령자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과 총 실업률 그리고 고령인구비율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여성고령자에게는 고령인구비율만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은 전체모형 분석과 마찬가지로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보수주의국가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이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에게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은 남성고령자에게는 부적인 관계를, 여성고령자에게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보수주의국가들에서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분석기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결과로 추론된다. 또한 적극적 및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은 남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비율이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관대한 실업급여가 남성고령자의 조기퇴직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보수주의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유주의국가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과 연금지출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급여수준이 낮은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국가에서 연금제도와 고령자의 은퇴 시기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먼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고 연금지출비율을 낮추는 등 은퇴의 유인요인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배출요인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즉,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함께 정년연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채 연금수급연령만 높일 경우 고령인구의 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기업의 고용구조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처럼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노동시장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연구의 함의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령인구비율은 더 이상 배출요인이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고령화전략의 일환으로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경비하절 우리나라도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수와 고용기회의 접근성에서 남성고령자와의 차별을 해소하절야 하며, 아울러 고령자고용에 있어 성차별과 연령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철희·김영범(2001). 노령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일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2호, 2001, 12, 140-161.

실업크레딧제도가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용취약계층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지은

I. 연구의 목적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1988년에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고용유연화,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내부사각지대의 발생은 국민연금의 제도본연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 복지국가에서 등장한 것이 실업크레딧제도로, 실업급여수급기간을 공적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가입자의 급여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상승되고, 실업기간이 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 1) 고용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 2) 고용취약계층일수록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여수준향상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5차년도~10차년도(2002년~2007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 기준으로 27세 이상 59세 미만의 임금근로자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이를 merge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인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의 수급권발생효과분석은 merge한 데이터 중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수급한 경험이 있는 152명의 국민연금가입자를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분석인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의 급여수준향상효과분석은 먼저 merge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임금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52명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예상노령연금을 추정하여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은 모두 각각 고용유형, 직종, 고용의 직접성, 노동시간형태를 기준으로 고용취약계층과 일반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Ⅲ. 연구 결과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발생효과 분석에 있어서 고용취약계층이 일반계층에 비해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직종에서만 타당하며 고용유형·고용직접성·노동시간형태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 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는 109명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에는 110명으로 추정되어 0.09%의 수급자 증가율이 나타났다. 이를 고용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용유형의 일반계층에서 1.02%, 직종의 고용취약계층에서 2.13%, 고용의 직접성의 일반계층에서 0.96%, 노동시간형태의 일반계층에서 0.94%의 수급권발생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고용특성

(단위: 명/%)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 (A)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후 (B)		차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B-A)	증가율
고용유형	고용취약계층	6	5.8	6	5.7	0	0
	일반계층	98	94.2	99	94.3	1	1.02
직종	고용취약계층	47	44.3	48	44.9	1	2.13
	일반계층	59	55.7	59	55.1	0	0
고용의 직접성	고용취약계층	5	4.6	5	4.5	0	0
	일반계층	104	95.4	105	95.5	1	0.96
노동시간형태	고용취약계층	3	2.8	3	2.7	0	0
	일반계층	106	97.2	107	97.3	1	0.94

둘째, 노령연금 급여수준향상효과 분석에 있어서 고용취약계층일수록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여수준향상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직종에서만 타당하며 고용유형, 고용직접성, 노동시간형태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유형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의 노령연금 수급액이 0.27% 증가한 반면 일반계층은 2.65% 증가했고, 직종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이 2.13% 증가한 것에 비해 일반계층은 2.76% 증가했으며, 고용의 직접성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이 1.01% 증가하고 일반계층은 2.37% 증가했다. 또한 노동시간형태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이 0.57% 증가한데 비해 일반계층은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후의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취약계층은 직종에 있어서만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층은 모든 고용특성에서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분석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2100원 가량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전후의 고용특성별 예상노령연금 수급액 변화

(단위: 원/%)

구분	고용유형		직종		고용의 직접성		노동시간 형태	
	차이	증가율	차이	증가율	차이	증가율	차이	증가율
고용 취약계층	2,000	0.27	16,000	2.13	8,000	1.01	4,000	0.57
일반계층	19,000	2.65	19,000	2.76	17,000	2.37	18,000	2.50
전체	17,000	2.37	18,000	2.50	19,000	2.65	12,000	1.68

고용취약계층과 일반계층에 대한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의 효과성 비교분석에서 연구 가설과 달리 직종 외에는 고용취약계층보다 일반계층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 분석시점에서의 실업급여제도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업급여수급을 기준으로 그 적용대상 및 크레딧인정기간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실업급여수급에 따라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권발생효과와 급여수준향상효과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수집된 2002년~2007년은 실업급여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업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주로 일반계층에 치중되어 있었고, 고용취약계층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데이터에는 일반계층보다 실업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진 고용취약계층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역시 일반계층에 비해 짧아,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은 실업급여제도가 고용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포괄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2002년~2007년의 실업급여수급자의 증가추세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듯이, 향후 수년 사이 고용취약계층에서 실업급여수급자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서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발생효과와 급여수준향상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고용특성별 분석에서 직종의 경우, 유일하게 고용취약계층의 노령연금 수급권발생효과 및 급여수준향상효과가 일반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직종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의 고용취약계층 비율이 일반계층의 비율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고용취약계층에서 실업급여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용취약계층에서의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의 효과성이 고용유형·고용의 직접성·노동시간형태 면에서도 일반계층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크레딧제도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 요건들을 고용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하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에 합당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 및 크레딧인정기간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재정적 상황 및 기타 제도와의 연계, 일반 국민들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된다면 상당수의 고용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업크레딧제도를 모든 고용취약계층에게 관대하게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기본적 취지는 사회보험제도로서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크레딧제도는 본인의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국민연금 가입자, 즉 실업크레딧제도 없이도 7~8년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실업으로 인한 2~3년의 가입중단기간을 실업크레딧제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실업크레딧인정기간과 연계시킬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듯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업급여수급을 요건으로 하는 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실업크레딧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1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점차 실업급여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게도 실업급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인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고용취약계층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철, & 권혁진 (2007).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 효과분석-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251-275.

김수완 (2006).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2(1), 29-56.

이광석 (200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각지해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173-201.



노인인력개발포럼

원.고.모.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인력개발포럼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분야와 관계된 이론, 정책 현장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연2회 발행하는 반기별 학술지입니다.

노인인력개발포럼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옥고를 신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게재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하며,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원고투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고안내

■ 연구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포함 노년기 노동 관련 분야
-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
- 노인인력개발 관련 분야
- 노후 소득보장 및 노년기 사회참여 관련 분야
- 기타 노인복지 분야 전반

■ 발행

- 연 2회 발행

■ 원고모집기간

- 수시모집

■ 원고분량

- A4용지 20내외(참고문헌 포함)
- A4 용지 반장 정도의 요약문 포함할 것

■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www.kordi.or.kr 접속 로그인 후 우측하단의 배너 클릭)

■ 기타

- 투고하신 원고는 익명의 심사자를 통한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개별통지됩니다.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
- TEL : (02)6007-9181
- FAX : (02)6203-6908~9
- E-mail : jwloomi@kordi.or.kr